

韓國警察資料센터 設置 및 運營에 關한 研究

曹 靜 江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방법

II. 경찰자료센터의 기능 및 변천과정

- 1. 경찰자료센터의 개념 및 기능
- 2. 경찰도서관의 변천과정

III. 경찰관서 자료실의 현황분석

- 1. 각 관서 발간물 및 배포상황

2. 기관별 자료실 실태분석

3. 조사결과의 요약

IV. 경찰자료센터 설치에 관한 구상

- 1. 자료센터의 기능
- 2. 자료센터의 조직
- 3. 자료센터의 운영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論 文 概 要

현대사회가 정보사회라고 할 때 자료는 정보를 생산하여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따른 각종 치안수요는 나날이 다양화해지므로 이에 따른 치안대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료를 통한 정보의 축적없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조직내에는 경찰자료를 일괄적으로 수집, 보존, 활용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으므로 각종 치안대책 및 경찰행정 연구, 교육을 위한 자료 활용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경찰조직에서는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였는가를 경찰행정 변천사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후반부는 경찰조직내의 자료발간, 보존, 수집, 정리, 활용상황을 설문지 조사, 면담 등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경향을 발견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경찰기관 203기관은 대부분 자료실 시설이 없어 자체기관 발간 자료마저 보존되지 않고 있다. 현재 보유자료는 50~200권 이내이며 대부분 상부 경찰기관에서 배부된 자료이다. 연간 자료 구입비는 50~100만원 미만이며, 타기관과의 자료교환은 하지 않고 있다. 자료를 관리하는 별도 직원이 없고 대부분 서무직원이 상부기관 자료를 취급하나 자료정리, 활용교육은 받지 않았다.

앞으로 자료이용 교육은 경찰신임교육 및 보수교육 기간에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각 경찰국에 자료실을 두고 치안본부에 “경찰자료센터” 설치를 원하고 있었다. 특히 자료가 보존되지 못하는 이유중 필요한 자료라 하더라도 보안검사 등이 번거러워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려 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경찰자료의 빈곤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치안본부에 치안본부장 직속기구로 경찰자료센터를 설치한다.
2. 각 시도 경찰국에도 경찰국장 직속으로 자료실을 설치하고 치안본부 경찰자료센터의 지도와 더불어 협조 체제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3. 별도의 경찰인쇄소를 설치하여 경찰자료 발간은 이곳에서 하게 하고 발간된 자료는 경찰자료센터에 납본토록 한다. 이렇게 하면 경찰발간물 종합목록의 작성과 배포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
4. 자료수집은 자체기간 내의 발간물은 빠짐없이 보존하고, 보존기간이 지난 비밀자료라도 필요성 있는 자료는 보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5. 자료활용은 신임경찰교육기간이나 보수교육기간에 자료이용법 강의를 실시하여 자료수집과 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킨다. 그리고 타 기관과의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수서,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 “경찰자료센터” 책임자는 중요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고 치안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7. “경찰자료센터”는 각 경찰기관에 신간자료목록, 자료활용 등에 관한 소식을 수시로 배부한다.
8. 자료관리를 위해 자료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인사고가제 평점

에 반영시키는 제도를 실시한다.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기초를 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¹⁾ 이러한 정보사회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경제성장을 촉진했고, 사회의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지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나 사회의 발전 속도를 좌우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라 각종 치인수요도 기업체의 산업정보 절도 및 컴퓨터 범죄 등 현대형 화이트 칼라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²⁾ 범죄의 양상 또한 다양화, 지능화, 광역화 되므로서 이에 대한 치안대책은 어떤 직업적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식은 자료를 통한 정보의 축적없이 불가능하며, 좋은 시책 역시 풍부한 과거의 자료와 정확한 재래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충분한 자료없이 시책의 내실을 기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미래의 상황 변동에 대한 예측을 결여한 기획은 시행착오를 초래하기

1) 존나이스버트(1983), 「대변혁의 물결」, 한국경제신문의신부(역)

서울: 동광출판사, p. 23.

2) ① 현대범죄형: 전통적인 범죄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기존에 법적사고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현상으로 현대경제사회구조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범죄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광·협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나 광의의 의미로 컴퓨터범죄, 자동판매기범죄, 도청, 하이재킹, 인공생명유지장치의 중단, 장기의 이식, 약물중독에 의한 태아의 사산, 기업공해, 노동재해 등이 있다.

김기춘(1984), 「형법개정사론」, 서울: 삼영사, pp. 194~196 참조

② 화이트칼라범죄: 이는 1939년 미국의 범죄사회학자 E.H. Sutherland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 흰 와이셔츠의 멋진 칼라를 미끈하게 차린 상층사회인사 내지 고급사무원이 범하는 범죄를 가리키는 말로 non-collar 범죄와 대조적으로 쓰인 말이다. 그는 “상류사회경제계층의 사람이 그의 직업상의 생활과 관련하여 범하는 형법위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E.H. Sutherland “White collar crime”(1961), p.9.

이종원, (1984), 「경제범죄론」, 일신사, p.105에서 재인용

에 반영시키는 제도를 실시한다.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기초를 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¹⁾ 이러한 정보사회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경제성장을 촉진했고, 사회의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지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나 사회의 발전 속도를 좌우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라 각종 치인수요도 기업체의 산업정보 절도 및 컴퓨터 범죄 등 현대형 화이트 칼라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²⁾ 범죄의 양상 또한 다양화, 지능화, 광역화 되므로서 이에 대한 치안대책은 어떤 직업적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식은 자료를 통한 정보의 축적없이 불가능하며, 좋은 시책 역시 풍부한 과거의 자료와 정확한 재래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충분한 자료없이 시책의 내실을 기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미래의 상황 변동에 대한 예측을 결여한 기획은 시행착오를 초래하기

1) 존나이스버트(1983), 「대변혁의 물결」, 한국경제신문의신부(역)

서울: 동광출판사, p. 23.

2) ① 현대범죄형: 전통적인 범죄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기존에 법적사고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현상으로 현대경제사회구조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범죄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광·협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나 광위의 의미로 컴퓨터범죄, 자동판매기범죄, 도청, 하이재킹, 인공생명유지장치의 중단, 장기의 이식, 약물중독에 의한 태아의 사산, 기업공해, 노동재해 등이 있다.

김기춘(1984), 「형법개정사론」, 서울: 삼영사, pp. 194~196 참조

② 화이트칼라범죄: 이는 1939년 미국의 범죄사회학자 E.H. Sutherland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 흰 와이셔츠의 멋진 칼라를 미끈하게 차린 상층사회인사 내지 고급사무원이 범하는 범죄를 가리키는 말로 non-collar 범죄와 대조적으로 쓰인 말이다. 그는 “상류사회경제계층의 사람이 그의 직업상의 생활과 관련하여 범하는 형법위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E.H. Sutherland “White collar crime”(1961), p.9.

이종원, (1984), 「경제범죄론」, 일신사, p.105에서 재인용

쉬우므로 과거의 제반 자료와 사례를 기초로 하여 미래를 展望하고 計劃하기 위해서는 歷史的 기록사실을 보존하는 것이 情報社會를 살아가기 위한 커다란 財産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

더구나, 警察業務중 경찰수단의 특수성에는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는 第1次的 目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國民의 利益과 直接的이고 可視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이러한 直接的인 요소의 비중에 따라서 警察은 國民의 自由, 財産權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警察의 권력행사는 그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犯罪의 진압을 위한 것이든 法益의 보호를 위한 것이든간에 그 결과는 國民의 損益과 直接的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警察의 活動에 대한 國民의 반응은 대단히 민감하고 直接的이다.⁴⁾

그러므로 現代와 같이 복잡 다양한 社會에서 國民의 인권과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법집행을 수행해야 하는 警察活動에는 여러가지 面에서 그 活動의 基礎를 科學的인 資料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判斷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特히 警察運營의 防犯警察, 交通警察面에 있어서는 그 對象에 대해서 學文的, 技術的인 研究를 행하여 그 성과의 근거로 根本的인 對策을 수립하지 않으면 충분한 效果를 거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最近의 現實이다.⁵⁾

이를 위해서는 警察機關 내에서 生産, 發刊된 資料는 一般的으로 어떠한 資料로도 대신할 수 없는 情報를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完璧하게 수집하는 行政的인 차원의 방침과 제도적인 장치가 必要하다. 그러나 現 警察組織內에서는 自體機關의 발간 資料조차 수집, 정리, 활용하는 전담기구가 없고 부분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극히 미온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警察業務가 보다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基礎資料를 근거로 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경찰자료센터”의 設置를 구상하고 運營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3) 서울시경찰국(1974), 「서울경찰연혁사」 서울: 서울시경찰국, p.1.

4) 백형조(1984), 「경찰조직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13.

5) 警察廳長官官房, 編(1978), 「全訂警察法解説」, 日本: 東京法令出版, p.133.

2. 研究의 方法

인간생활은 기록과 더불어 살아왔고 또 이 기록으로 文化遺産을 保存하여 왔다. 오늘날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축적하여 이를 제 때에 活用하는 문제를 國家社會 및 企業, 團體, 個人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⁶⁾ 더구나 多樣化, 專問化를 요하는 警察業務를 조직 전체의 연관 속에서 통계와 資料를 保管하고 이를 分析, 評價, 綜合하는 통합기능을 연구 발전 시켜야 하는 警察機關으로서 “警察資料센터”의 별도 전담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立場에 있다.⁷⁾

이러한 기구 설치를 위하여 本 研究에서는 文獻을 통하여 과거에는 어떠한 資料保存기구가 있었는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현재 각 警察管署의 資料保存 實態와 각 警察局에서 매년 어느 정도의 자료가 生産, 發刊되고 어떻게 保存되는지를 알기 위해 治安本部, 서울特別市 警察局, 경기도 경찰국, 忠北·忠南 警察局을 現場 답사하였다. 對象資料는 1980~1984년간의 자체기관 發刊物이었으며 장비와 기록부에 의해서 直接 발체하였고, 이를 기관별, 연도별 기능별로 分析하고 發刊物에 대한 소요 경비도 算出하였다.

그리고 경찰기관 자료실 現況의 問題點을 알기 위해 위의 4개 관서를 방문 각 企劃擔當者와 면담을 통하여 資料貧困原因을 淸취하였다. 資料室 實態把握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문지법을 採擇하였다. 대상은 전국 경찰국과 경찰서의 기관장으로 경무관 19명과 총경 184명이었고, 설문지 248부를 配布하여 203부가 회수되었다. 그 회수된 설문지는 자료실 시설 및 수집, 정리, 자료활용 그리고 敎育 등의 견지에서 分析하였다. 궁극적으로 “警察資料센터”설치에 대한 이들의 견해도 함께 조사하므로써 文獻調査, 면담방법, 설문지 조사 등을 겸하였다. 이같은 警察資料 管理의 問題點 및 원인조사를 바탕으로 “警察資料센터의 설치 및 運營方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6) 박정길 (1981), “정보관리의 중요성과 그 시스템 組織에 관한 研究”, 『부산산업대학논문집』, 제2권3호, p.227.

7) 김해동 (1978), “전문적교육기관으로서의 警察大學”, 『警察論文集』, (인천:警察大學) 제2호, p.22.

Ⅱ. 警察資料센터의 機能 및 變遷過程

1. 警察資料센터의 概念 및 機能

警察資料는 도서관법⁸⁾ 상이나 도서관학에서 말하는 資料의 概念⁹⁾으로 보아 警察에 관한 일반도서, 參考도서, 정기간행물, 특수자료 등으로 경찰주제에 관련된 印刷 및 非印刷의 모든 資料를 말한다. 그러나 일상업무 처리를 위한 공문서는 별도의 정부문서 관리 실무요령에 의하여 크게 나뉘어 일반문서와 영구보존 문서로 구분하고 일반문서는 연도별로 자체기관 문서창고에 보관한 후 일정 보존기간이 끝난 후 폐기한다. 영구보존문서는 총무처 기록보존소에 이첩되어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保管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警察資料의 概念에서는 除外하였다.¹⁰⁾

“警察資料센터”는 경찰주제와 관련된 資料를 광범위하게 수집, 정리, 活用할 수 있도록 全國의 各 警察局 內에 경찰자료실을 설치하고 이들 자료실간의 중심 역할과 機能을 擔當하기 위하여 組織된 특수도서관의 概念을 말한다. 그러나 이미 대학도서관의 機能을 가지고 있는 警察大學 도서관은 “警察資料센터” 概念에 包含시키지 않는다.

“警察資料센터” 機能은 立法·私法·行政 各 부문에 부설된 도서관, 地方自治 團體 또는 會社나 特殊法人體, 組織體와 企業體의 도서관, 그리고 특수한 경우 또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 기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警察資料센터”는 경찰기관의 목적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정보센터로서 경찰업무수행에 必要한 정보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이를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資料의 索引, 초록, 번역, 참고업무에 應할 체계를 정비한 機能을 갖추어야 한다.¹¹⁾

8) 도서관법 : (1963.10.28 法律 제 1424호 제정), 법제처(편), 「大韓民國 現行 법령 집 제 14권」, p.756.

9) 신숙원(1982), 「도서관자료의 활용법」, 서울: 신학사, pp.71~101 참조.

10) 大韓民國政府(1985), 「문서관리실무요령」, p.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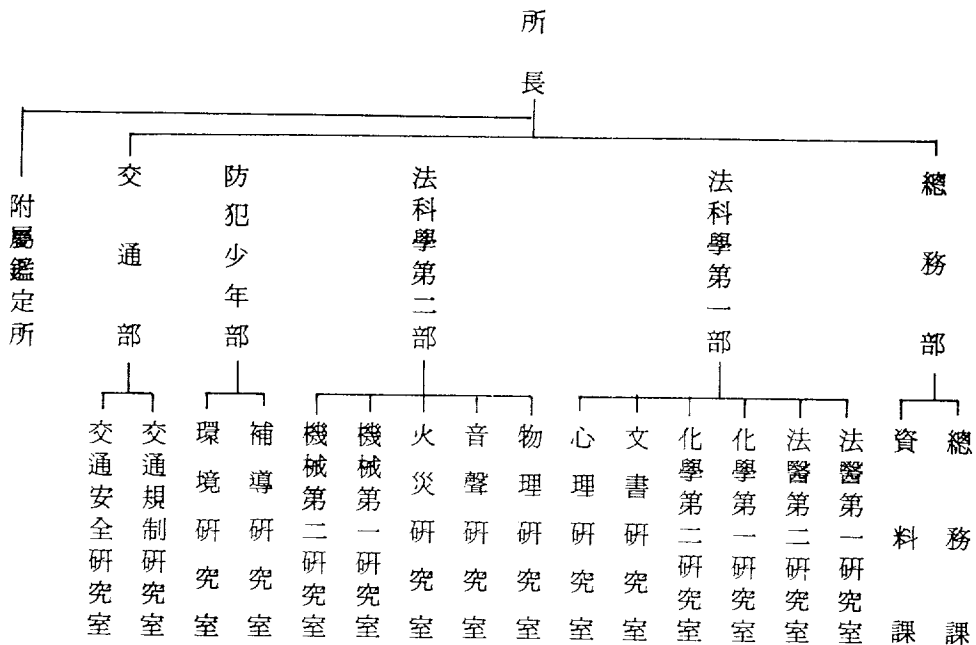
11) 김경일(편), 「특수도서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p.13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外國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科學警察研究所”의 資料課가 있으며 이것은 국민의 인권을 尊重하고 警察業務執行을 科學的인 기초자료를 根據로 해서 合理的인 運營을 위하여 과거의 형사부에 소속된 “科學搜查研究所”를 소화 34년에 “科學技術研究所”로 改稱하고, 경시청 직속기구로 昇格시킨 警察 研究機關의 특수도서관이다.

여기에서 資料科의 사무분장은 警察法 시행규칙 16조에 訂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자료일반의 수집, 정리, 보관 및 利用에 관한 일
2. 기관지 류의 간행 및 各種資料의 作成에 관한 일
3. 弘報에 관한 일

표 1. 科學警察研究所의 組織機構 (1972 年末現在)



자료 : 치안본부기획자료실, 역 (1973), 「日本警察活動의 現況」, p.452.

4. 도서정리, 保管에 관한 일 등이다.¹²⁾

캐나다에서는 법집행 참고센터(Law Enforcement Reference Center)(LERC)가 있으며, 법집행 참고센터는 캐나다의 왕립 기마경찰대와 경찰대학 양쪽에 자료를 提供해 주는 특수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법집행과 경찰분야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며 특히 청소년 犯罪, 마약범죄조사, 중요범죄조사에 대한 자료들을 강화하고 있다. 警察大學의 요구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警察行政學科 法執行에 관한 과목은 특별히 수집하고, 그 외에 經營學, 行政學, 警察特殊分野 등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法執行 參考센터는 또한 신체적응, 병기, 전술, 法執行, 군대역사, 왕립, 기마경찰 문헌, 교통통제, 교통안전, 法執行者들에 대한 흥미거리기사에 관한 소설과 저작물까지도 충분히 선정을 하여 보유하고 있다.

法執行 참고센터는 연방과 주(州)의 문헌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국회와 大法院이 충분히 선정한 문헌들을 보유하고 있다.

즉, 一般犯罪와 靑少年犯罪 國立研究所, 國立犯罪 자료 서비스의 마이크로 휘시, 法執行과 一般教養 정기간행물, 초록과 색인등 일반 참고서와 廣範圍하게 선정된 시청각 자료들이다. 그리고 이 資料들의 活用을 위하여 완전히 전산화되어서 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있다. 1985년 9월의 법집행 참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은 도서가 30,000 권, 정기간행물 110 종, 참고자료 170 종, 마이크로폼 형태자료 2,000 종, 시청각자료(필립, 비데오테이프, 슬라이드)가 950 종이다.¹³⁾

2. 警察圖書館의 變遷過程

警察이라는 用語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Politeia와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된 것으로 國民의 生命과 財產을 보호하고 공공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그 職務로 하는 것이다.¹⁴⁾

12) 警察廳長官官房, 編(1978), 앞글, p.389.

13) 1985年9月24日 Candian Police College Police Library P.O.Box 8900 Ottawa ONTARIO K1G 3J2, CANADA에 도서관 조직, 경영에 대한 서신을 발송한 결과 받은 회신 내용중 일부임

14) 백형조(1984), 「경찰조직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따라서 警察의 概念은 인간의 社會生活과 더불어 變遷, 발전되었으며 現代에 있어서 人민들은 警察에게 奉仕와 保護를 기대하기에 이르렀다. 社會의 變모에 따라 警察行政의 需要는 시시각각으로 變化되어 가고 社會의 安寧秩序를 유지, 회복함에 국한되었던 경찰임무는 이제 國家發展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積極적 事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화, 근대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社會的 要求에 부응하려는 당연한 추세로 생각되고 있다.¹⁵⁾

이러한 國民의 要求를 미리 간파하고 國民이 원하는 奉仕를 하기 위해서는 社會變動에 따르는 정보를 미리 알아내어 대처하기 위한 準備은 重要한 것이다. 실제로 경찰기관에서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保管하였으며 또한 活用하였는가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현재 도서관 기능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警察의 行政組織을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갑오경장 이후, 일정시대, 8.15이후 경찰행정 變遷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¹⁶⁾ 이와같은 각 시대별 경찰행정 的 構造적 變化에 따라 도서관 機能 基구상 的 變遷과정 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갑오경장 이후의 경찰행정 基구 (1894~1910)

이 시기는 우리나라 固有의 警察체제가 廢止되고 日本에 식민지화되는 경찰구조상 的 混亂을 이루었고, 그 目的과 廢能이 日本의 統治체제를 위한 것이었다. 도서관이나 자료실 機能과 相關된 基구는 警부대신 아래 衙門이 있었고 警무국에 警무과와 審問과가 있었으며, 警무국 소속으로 文書과에서 關聯業務를 掌할수 있었다. 이 때 文書과 的 事務담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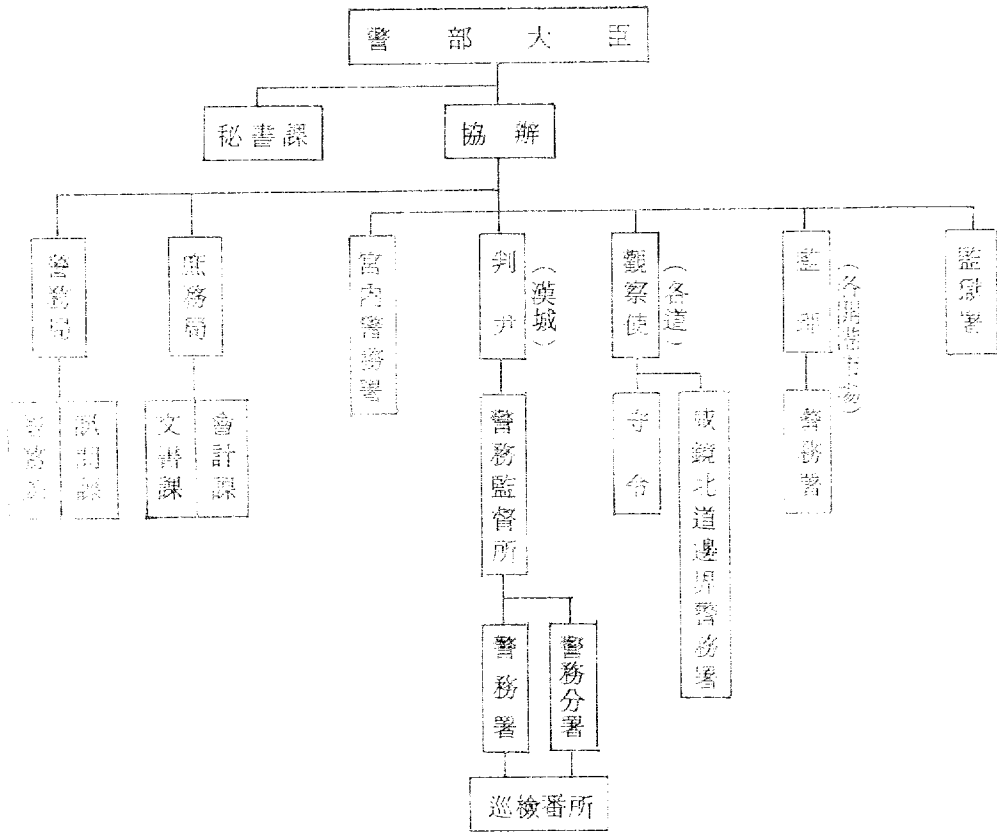
- 公文書類 및 封安문서와 接受, 發送에 關한 事務
- 公文書類의 편찬, 보존에 關한 事務
- 圖書 및 서류간행 保管에 關한 事務
- 警察관리 복제, 基구과 其他 모든 製식에 關한 事務
- 警무관 회의에 關한 事務
- 本부소속 査, 主, 判任官(勅, 奏, 判任官) 이하 管理의 査석명부와 基구

15) 成희구 (1983), 『한국경찰기구에 對한 研究』,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

16) 서기영 (1981), 『한국경찰행정사』, 서울: 법문사, pp.576~579.

지 및 전임 사망목 정리에 관한 事項 등이었다.¹⁷⁾ 당시 이 극저「경부」인 경찰기구는 표 2와 같다.¹⁸⁾

표 2. 二局制「警部」案 警察機構表(光武 6年, 1900)



출처: 內務部 治安局 (1972), 『韓政警察史』, p. 315

17) 劉, 榮, 撰任의: 삼국통사 이후의 씨족제국을 말하며 고종 26년(1891) 을미 10월 23일 1차에 정·총을 열었고, 1품 2품만 정, 총을 두고, 정 1품까지 총 2품까지를 가진 3품에서 6품까지를 2등위, 7품서 9품까지를 3등위라고 하였다.

내무부 (1972), 『한국경찰사』, (서울: 치안분부), p. 310.

18) 내무부 (1972), 『한국경찰사』, (서울: 치안분부), p. 445.

2. 日政時代의 警察行政 構造(1910~1945)

韓·日 합병에서 日本의 패망에 이르는 때는 조선 총독부 경무국 警察時代이다. 당시는 일차대전, 3·1 運動, 지나사변, 이차대전 등 國內外 政勢 격동기를 배경으로한 변천 단계는 무단통치 아래의 警察(헌병 경찰통치시대) 및 문화통치 이후의 警察(조선 총독부 경찰국 경찰시대)이며 그 特色은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第1次大戰과 3·1 運動으로 인한 소위 문화통치 경찰체제로서의 朝鮮 총독부 경무국을 설치하였고,

둘째, 國內外的으로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의 強壓政策

셋째, 소위 「經濟成長 五段階」

네째, 만주 지나사변, 第2次大戰 등 戰爭對比 對策

다섯째, 대륙법계 警察形態의 외형적이며 형식적인 成長期였으나 그 實質에 있어서 독일식 전체 警察國家 체제의 日本式 모방경찰체제의 成長期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日·獨·弗 등의 이차대전의 패망으로 인하여 소위 日本式 전체 警察國家 체제는 해체되었으며, 곧 사내총독에서 동조에 이르는 日本 전체 警察國家 警察行政 체제는 종말되었다.

여섯째, 3·1 運動 事件의 혹심한 처리등 警察行政 思想 가장 큰 우리 民族에 대한 警察的 피해를 준 시대이다. 1910年 헌병경찰 시대에는 총독부 아래 경무 총독부가 있고 그 밑에 서무과, 고등경찰과 소속으로 기밀계와 같은 과속에 포함되었다. 도서관 業務는 現在의 도서관이나 자료실 機能이 아닌 신문, 잡지, 출판물 및 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검열하는 검사기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총독부 경찰기구는 표 3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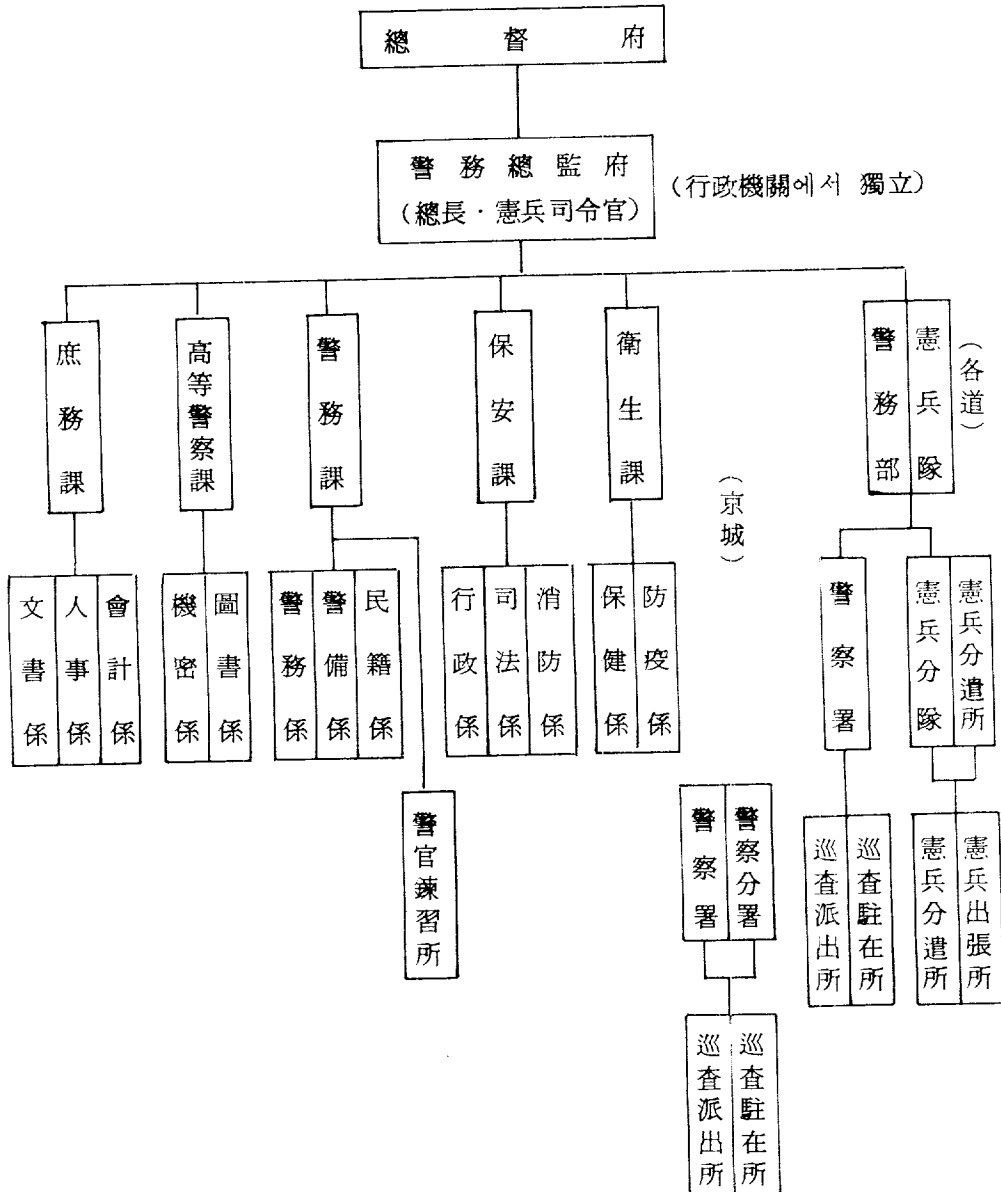
第1次 世界大戰 以後 국제정세 변화와 3·1 運動을 전후한 1919년 8月에는 조선 총독부의 관제를 改正하여 조선 총독부의 경찰기구를 「文化 警察制」로 개정하였는데 조선 총독부 警察機構는 표 4 와 같다.

19) 서기영(1981), 「한국경찰행정사」, 앞글, p.56.

丑3.

日帝總督府 總警機構表 (隆熙 4 年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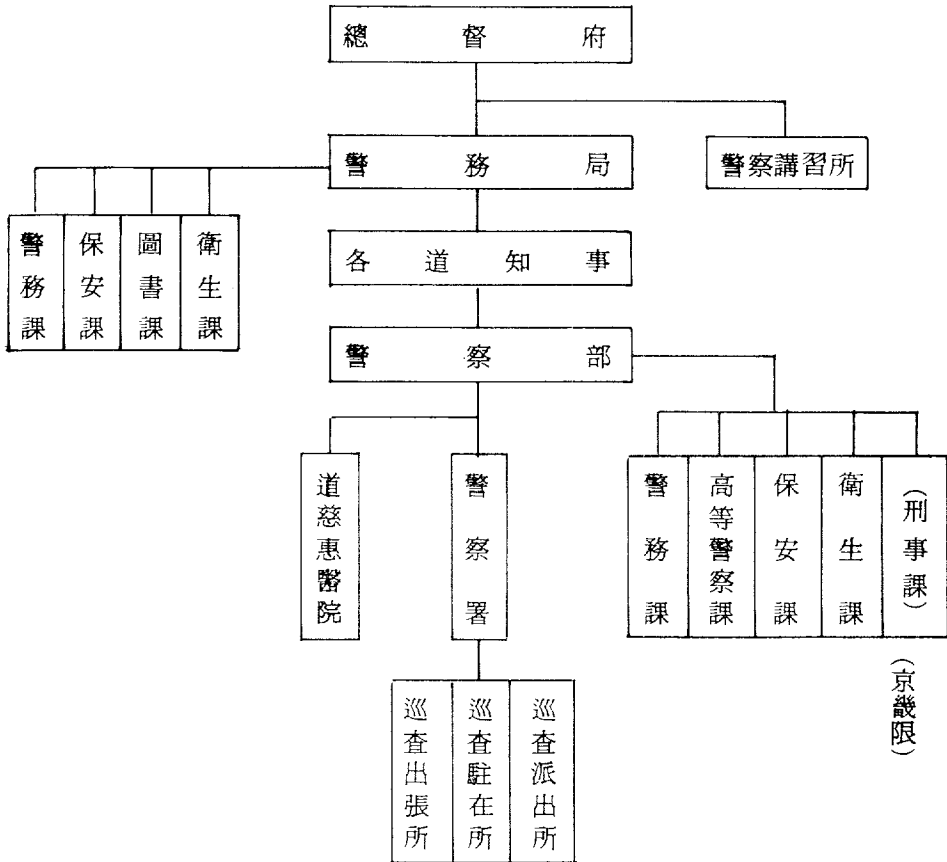
(憲兵警察制)



資料：內務部 治安局 (1972), 「韓國警察史 I」, p. 1061

표 4.

朝鮮總督府 警察機構表 (1930)



資料：서기영, (1981), 「韓國警察行政史」, p.613

이 표 4를 살펴보면 總督府 밑에 경무국을 설치하고 경찰관서 관제를 廢止하는 동시에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지방 경찰권을 도지사에게 예속시키고 헌병을 警察執行機關에서 除外하고 警察事務를 警察官署 단일체제로 환원하였다. 이 때는 고등경찰과 소속 도서계의 위치를 강화하여 警務課, 보안과, 위생과와 같이 도서과로서 승격시켰다.

도서과의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 신문, 잡지 및 출판물 保存에 關한 事項

- 저작권에 관한 事項
- 검열의 신문, 잡지 및 출판물 보존에 관한 사항
- 활동사진·필름의 검열에 관한 사항
- 활동사진·영화의 단속에 관한 사항
- 축음기·레코드의 단속에 관한 사항이었다.²⁰⁾

日政時代의 資料保存에 관한 기능은 경부독립 경찰기구(1900) 시대는 서무국 문서과 사무분장 4항에 도서 및 서류간행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朝鮮總督府 警察機構 헌병경찰제(1910~1919) 시대는 고등 경무과 도서계에서 新聞, 雜紙 및 出版物, 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였고, 朝鮮總督府 文化警察制(1930) 시대에는 도서과 사무분장 1항에 신문, 잡지 및 출판물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인들은 記錄保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므로 식민정책에서 도서과의 위치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도서과의 업무에서 出版物 검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출판물을 保存한 것은 言論, 出版 彈壓을 위한 정책수립에 수집한 資料를 活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日本이 정보 대국으로서 나날이 정보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經濟的 利益과 강대국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기록보존과 情報을 細密하게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도 무리가 아니다.²¹⁾

3. 8·15以後 미군정 및 政府樹立 後의 警察行政과 資料管理業務

1945년(단기 4278년) 9월 9일에 미군이 진주하고 미 진주군 사령관 「하지」중장과 일본 총독 「아베신따로」간에 항복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9월 10 「아놀드」소장이 군정 장관으로 就任하여 군정이 실시되면서 軍政警察은 民主警察의 전환을 기도하면서 많은 변천을 거듭하였고, 이 때의 警察 特徵은 다음과 같다.²²⁾

첫째, 한국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警察이었다.

둘째, 軍事性을 띄고 미점령군의 安全과 그 兵力의 유지 및 軍事行動의 成功에 협조하는데 임무가 있었다.

20) 내무부(1972). 앞글, p.914.

21) 박정길(1981). 앞글, p.233.

22) 내무부(1972). 앞글, p.957.

세째, 軍政警察은 임시적인 警察이었다.
 네째, 民主主義에 입각한 警察임을 특색으로 한다.
 다섯째,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 警察로 전환하였다.
 여섯째, 戰鬥警察의 특수한 성격을 띠었다. 그 중 두드러진 特徵은 일경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공보실 업무의 설치령과 機構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무부령 제 1 호 (1947년 2월 28일)

- 一. 警察公報室이 경무부 및 각 관구경찰청에 설치되었음.
- 二. 경무부 공보관은 警務部長의 直接監督을 받으며 그 계급은 총경으로 함.
- 三. 총경인 公報官은 警務部長의 각료로서 警務部 및 각 관구에 공보제도를 설치할 責任을 부여함.
- 四. 공보관의 重要職務는 警察消息을 민중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발표하며 또 民主主義의 警察의 실천 방도로서 일반대중에 대한 교화 및 그 實行方針을 수립함.
- 五. 공보관은 警務部 管下 전 경찰에 관한 모든 公報를 주관, 宣傳, 發表하며 또 이를 심사, 단속, 관리함.
- 六. 공보관은 특히 下記事項에 관하여 責任을 부여함.
 - 가. 發表法은 각 부간의 職務遂行上 緊密한 連絡을 취하기 위하여 공보부 기타 각 부와 협조할 것.
 - 나. 警察 發表文上의 準備가 송포 및 발표문을 이해시키는데 必要한 훈련의 조성
 - 다. 警察 發表文에 관한 통계기록서의 保管
 - 라. 正當한 목적에 어그러지지 않는 限度內에 있어서 警察府 各局 및 관구 경찰청과 連絡 協助하여 「警察 News」를 신문기자에게 提供할 것
- 七. 각 관구 公報官인 경감 또는 警察官은 公報室 총경의 추천에 의하여 警務部長이 이를 임명함.
- 八. 警察公報官室 및 각 관구 경찰청 職員은 아래와 같다.
 - 총경 1 명—본부
 - 경감 3 명—본부
 경감 3명은 총경을 補佐하여 각각 아래의 職務를 분장함.
 - ① 公報

② 配付

③ 記錄

警監 10名—각 관구에 1名씩 公報官으로 配置함

警査 9名—각 관구에 1名씩 配置하여 관구 公報官을 補佐케 함.

通譯使 1名—本部 (계급은 경위로 함)

其他 職員 16名—本部 公報, 配付, 記錄事務에 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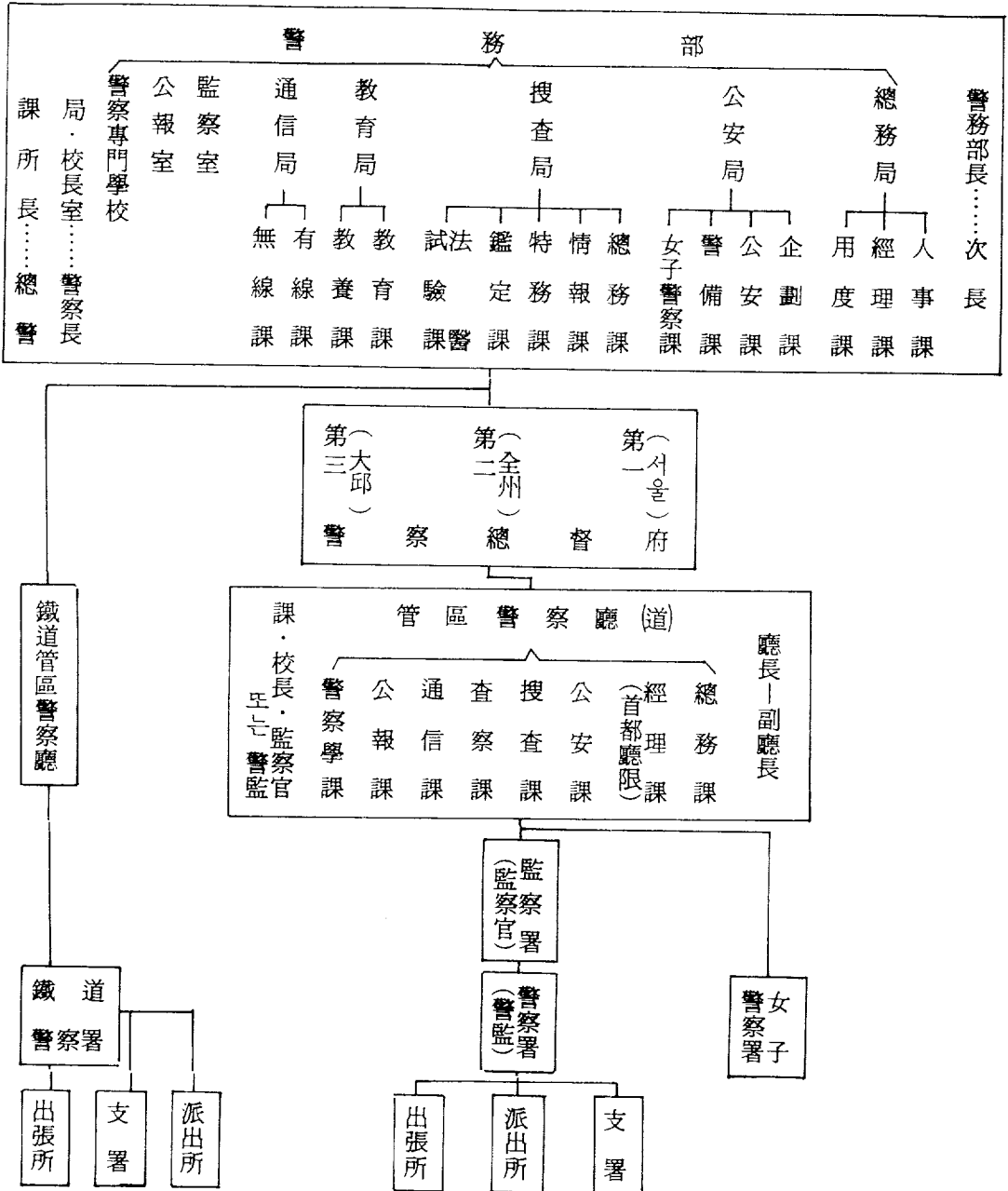
以上 組織員 數 40名이었다. 이 때 公報室은 現在의 도서관 및 資料室의 機能이 包含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군정청 警察機構는 표5와 같다.

위의 警務府令 第1號와 표5 機構表에서 우리는 그 때 당시 公報室이 警務部長의 직속기관으로 全國 警察官署에 기구망을 가지고 독자적인 業務를 遂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公報室長인 총경이 경무부장의 각료로서 경감 보좌관 3명과 통역사 및 기타 職員을 둔 인력구성은 公報室의 比重이 컸다는 사실을 證明한다. 이러한 公報業務 중 통계기록 보관 및 國民들에게 必要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처와 협조하는 사항은 현대 도서관의 情報提供 機能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教育機關으로써는 日帝時代의 警察官 講習所를 미군정에서 접수하여 朝鮮 警察學校로 改稱하였다. 「朝鮮 警察學校」는 경무국 직속하에 공보실과 같은 위치에 있었고 學校機構로는 서무과, 훈련과 및 출판과를 두었고 朝鮮 警察學校 機構表는 표6과 같다.²³⁾

23) 정진환(1979), 「韓國警察教育制到 發達에 관한 研究」, 건국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 論文, pp. 102~103.

표 5.

美軍政廳 警察機構表 (1946)



資料： 서기영 (1981), 「韓國警察行政史」, p. 619

뜻에 따라 “治安局 企劃資料室”을 設置하고 內務部 예규 第 64號 전문 4장 19 조로 管理運營 規定을 제정하였다. 이 때 資料室의 目的은 警察研究에 必要한 각종 警察資料 수집, 보존 活用이었으나 發刊資料 낭본 및 자료반납 등 職員들의 非協助로 인하여 1980년에 이 資料室도 廢室되고 말았다.

한편 警察專門學校는 1949年 9月 19日 警察教育機關 직제개정으로 학교장 밑에는 도서과, 교무과, 총무과가 있었으며, 이 때 “도서과에서는 도서보존 및 刊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그 業務가 規定되어 있다.²⁶⁾

그러나 1955年 12月 23日 기구 개편으로 도서과는 교무과에 포함되고 도서관 리코다 教材 發刊에 주력하게 되어 도서과는 교무과 교재계 도서실로 축소되었다. 더구나 6·25로 인하여 5만권의 장서를 소실한 후 資料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고 이로 인한 도서관리 業務는 단지 열람석만 提供하는 機能에 지나지 않았다.²⁷⁾

이러한 警察資料 管理에 대한 변천과정을 살펴 본 결과 日帝時代에는 資料保存에 대한 기구 및 行政力이 強力한 데 비해 政府樹立後 安定期에 들수록 資料管理에 대한 行政力이 소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日帝時代의 警察資料는 다소 찾을 수 있으나 그 이후 資料는 구하기 힘들고 자체 기관 내의 發刊資料마저 찾을 수 없는 것이 증명된다. 이것은 日帝時代 警察機構에서는 자료보존을 다른 課보다 큰 비중을 둔 것을 앞 표4의 機構表로써 알 수 있다. 日本의 行政은 무엇보다 資料管理에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을 그들의 식민정책에서 볼 수 있고 이러한 國家가 現代社會에서 富國으로 登場하는 것은 情眼化 時代에서는 당연한 結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主社會의 올바른 奉仕警察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輿論 취합, 신속한 판단력, 시기적절한 治安對策을 위하여 多樣하고 豊富한 資料樹立, 活用을 위한 “警察資料센터”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26) 大韓民國 總무처 (1949.9.19), “경찰교육기관직제”, 「관보」, 제 179호, 대통령령, 184호

27) 정진환 (1979), 앞글, p.121.

Ⅲ. 警察官署 資料室의 現況分析

1. 各 官署 發刊物 配布現況

業務執行에 있어서 自體機關의 發刊資料는 중요한 參考資料로서 수집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그 機關內에서 必要하여 만든 단행본, 잡지, 論文, 研究 報告書, 會議資料, 弘報資料, 팜플렛 등으로 別途의 豫算을 들이지 않고도 수집이 可能할 뿐 아니라 그 機關의 각 기능별 情報를 생생히 알 수 있는 資料이기 때문이다.²⁸⁾ 警察機關內의 生産資料를 빠짐없이 保存해야 하는 것도 業務의 特殊성과 豫算의 節減만이 아니라 教育資料 및 治安對策研究의 자체기관인 生産資料에는 다른 資料가 提供할 수 없는 情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각 警察機關의 자체 발간물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資料가 어떻게 蒐集·保存·活用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만성적인 警察資料 貧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治安本部,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警察局의 4 機關을 현지답사하고 1980~1984 년간의 發刊物 現況을 調査하였다. 위의 4 기관을 對象으로 한 것은, 治安本部는 警察機關의 中央部署이므로 企劃業務가 많아 대부분의 發刊物이 이곳에서 生産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경찰국은 全國 治安業務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대도시 警察機關이므로 도시 경찰국 發刊物을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관장하는 중간규모 경찰국 發刊物을 알 수 있기 위한 것이고, 충청북도 경찰국은 가장 소규모 警察局으로서 어느정도 자체 발간물이 生産되는가를 알기 위함이었다. 조사현황은 표 7 과 같다.

표 7 을 살펴본 결과 4 기관의 5 년간 發刊物은 총 2,804 종(1,601,832 부)이며, 이에 소요된 금액은 약 820,000,000 원이었다.

이를 年度別로 보면 平均 560 종이 발간되었고 약 164,000,000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한 機關別로 보면 연간 140 종의 발간물에 소요비용은 4,000 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발간물을 기관별로 분석하면 전체 2,804 종 중 治安本部가 38.20% (1,071 종), 서울시 경찰국 40.83% (1,145 종), 경기도

28) 김경일(편), (1969), 「특수도서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p. 54.

표 7

各 管署別 발간물 현황

(1980.1.4~1984.12.31)

과 별	기관	치안본부	서울시경	경기도경	충북도경	계
	부수 금액	941,866부 577,705,647원	612,002 168,190,353	16,057 34,413,888	31,908 36,013,875	1,601,832 816,323,760
계	종 %	1,071 (38.20)	1,145 (40.83)	328 (11.70)	260 (9.27)	2,804 (100)
경 무	종 %	87 (8.11)	227 (19.82)	86 (26.21)	131 (50.38)	531 (18.94)
기 획	종 %	238 (22.22)	140 (12.22)	45 (13.71)	9 (3.46)	432 (15.41)
감 사	종 %	13 (1.21)	29 (2.53)	8 (2.43)		50 (1.78)
인 사	종 %	30 (2.80)	63 (5.50)			93 (3.32)
장 비	종 %	49 (4.53)	26 (2.28)		1 (0.38)	76 (2.71)
통 신	종 %	14 (1.30)	10 (0.87)			24 (0.86)
보 안	종 %	128 (11.95)	76 (6.63)	25 (7.62)	21 (8.07)	250 (8.92)
교 통	종 %	77 (7.18)	83 (7.24)	12 (3.65)	5 (1.97)	177 (6.31)
경 비	종 %	37 (3.45)	135 (11.79)	39 (11.89)	24 (9.23)	235 (8.38)
작 전	종 %	158 (14.75)	102 (8.96)	23 (7.01)	34 (13.07)	317 (11.31)
수 사	종 %	52 (4.85)	41 (3.58)	16 (4.87)	12 (4.61)	121 (4.32)
형 사	종 %	7 (0.65)	22 (1.92)	24 (7.31)	2 (0.76)	55 (1.96)
외 사	종 %	51 (4.76)		6 (1.82)		57 (2.03)
정 보	종 %	49 (4.57)	78 (6.81)	17 (5.18)	16 (6.15)	160 (5.71)
대 공	종 %	46 (4.29)	35 (3.05)	11 (3.35)	5 (1.92)	97 (3.46)
기 타	종 %	35 (3.26)	78 (6.81)	16 (4.87)		129 (4.60)

국에 비해 3배 이상의 많은 종류를 生産하고 있다. 여기에 調査된 것은 各 경찰국 장비와 유인물 발간 記錄簿에 명시되어 經理係에서 費用을 支出한 발간물에 기록되지 않은 資料를 감안하면 더 많은 수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發刊物 數는 앞의 조사에서 한 警察局의 發刊物이 140종이며 所要費用이 年間 4천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 11개 警察局과 治安本部에서 生産되는 發刊物은 연간 1,700종으로서 대략 5億의 費用을 推定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警察署 發刊物과 情報課의 秘密 發刊物까지 합쳐서 생각하면 현재 警察資料의 미비현상은 豫算不足으로 資料를 구입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체기관의 生産된 資料를 廣範圍하게 保存하지 못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發刊物 配付에 있어서도 일반간행물과 다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는 業務의 特殊性으로 인해 시중에서 容易하게 구할 수 없으므로 꼭 必要한 資料가 秘密事項에 속한다고 하여 같은 기관의 도서관, 研究室에서 조차 保存되고 있지 않아 教育 및 治安對策 研究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을 표9에서 알 수 있다.

표 8. 치안본부 발간사항 (1983년)

구분 각과	일반자료	비밀자료	계	구분 각과	일반자료	비밀자료	계
계	101 (54.30)	85 (45.70)	186 (100.00)	작 전	13 (54.16)	11 (45.84)	24 (100.00)
경 무	4 (26.66)	11 (73.34)	15 (100.00)	수 사	8 (100.00)		8 (100.00)
기 획	30 (63.82)	17 (36.18)	47 (100.00)	형 사	2 (100.00)		2 (100.00)
장 비	1 (20.00)	4 (80.00)	5 (100.00)	외 사	14 (63.63)	8 (36.37)	22 (100.00)
통 신	5 (35.71)	9 (64.29)	14 (100.00)	정 보	2 (18.18)	9 (81.82)	11 (100.00)
교 통	12 (100.00)		12 (100.00)	대 공	10 (55.56)	8 (44.44)	18 (100.00)
경 비		8 (100.00)	8 (100.00)				

자료 : 치안본부 장비과 유인물 대장 참조 재작성

경찰국 11.70 % (328종), 충청북도 경찰국 9.27 % (260종)를 발간한 것을 알 수 있다. 각 기능별 부서에 따라 살펴보면 경무과의 發刊物이 제일 많아 전체 2,804종 중 18.94 % (531종)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기획과 15.41 % (432종)이고, 작전과 11.31 % (317종), 보안과 8.92 % (250종), 경무과 8.38 % (235종), 교통과 6.31 % (177종), 정보과 5.71 % (160종), 搜查課 4.32 % (121종), 대공과 3.46 % (97종), 人事課 3.32 % (93종), 장비과 2.71 % (76종), 의사와 2.03 % (57종), 형사와 1.96 % (55종), 감사과 1.78 % (50종), 통신과 0.86 % (24종)의 순이며 其他가 4.60 % (129종)로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인 서울시 警察局과 소규모인 충청북도 경찰국을 대비해 보면 서울시 警察局 發刊物이 충청북도 警察局에 비해 약 4배 가량이 많고, 경기도 경찰

표 9 治安本部 發刊物 警大配布事項

區分 各課	配付一般資料	配付非密資料	未蒐集資料	計
계	14 (7.52)	24 (12.92)	148 (79.56)	186 (100.00)
경 무		3 (20.00)	12 (80.00)	15 (100.00)
기 획	4 (8.51)	5 (10.64)	38 (80.85)	47 (100.00)
장 비	1 (20.00)		4 (80.00)	5 (100.00)
통 신		1 (7.14)	13 (92.86)	14 (100.00)
교 통	3 (25.00)		9 (75.00)	12 (100.00)
경 비		1 (12.50)	7 (87.50)	8 (100.00)
작 전	4 (16.67)	7 (29.16)	13 (54.16)	24 (100.00)
수 사			8 (100.00)	8 (100.00)
형 사			2 (100.00)	2 (100.00)
외 사	2 (9.09)	2 (9.09)	18 (81.82)	22 (100.00)
정 보		3 (27.27)	8 (72.73)	11 (100.00)
대 공		2 (11.11)	16 (88.89)	18 (100.00)

資料：警察大學 1983년 文書發送대장 기록참조 재작성

표 9 에는 治安本部 發刊物중 20.4 %만이 警察大學에 配付되었고, 그나마 일반자료 7.52 %, 秘密資料 12.92 %이다. 그러므로 警察大學에 配付된 資料가 모두 도서관에 보관된다 하더라도 治安本部 發刊資料 中 20.4 % 밖에 이용할 수가 없다.

위 표를 보면 治安本部의 發刊物中 54.30 %가 일반자료이며 45.70 %가 비밀자료에 속하므로 業務의 특수성을 알 수 있다.

發刊된 資料中 教育에 必要하다고 생각되어도 79.6 %가 學校에 配布되지 않으므로 發刊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자료를 구할 길이 없다. 이러한 配布는 警察大學이 전인 警察官을 양성하는 도장으로 감안할 때, 各 警察機關의 發刊物은 여기에 모두 配布되고 대학 도서관에서 選定하고 組織하여 活活用할 수 있도록 配慮하는 것이 자료배포의 合理的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2. 機關別 資料室 實態 分析

1. 一般的 배경

各 警察機關 資料室의 현황을 調査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治安本部 各 부장, 全國 警察局長(경무관)과 全國警察署長(총경)인 기관장을 대상으로 총 248 부 配布하여 이 중 203 명이 應答하였다. 全體 應答者 比率는 경무관 9.36 % (19名) 총경 90.64 % (184명) 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 21.67 %, 40대 28.07 %, 50대 25.61 %, 50대 이상이 24.63 %로 나타나 40대가 가장 많다. 표 10 參照

표 10. 調查對象者 階級別 年令

계급 \ 연령	계	30 대	40 대	50 대	50대이상
경 무 관	19 (9.36)	3 (15.79)	7 (36.84)	5 (26.32)	4 (21.05)
총 경	184 (90.64)	41 (22.28)	50 (27.18)	47 (25.54)	46 (25.00)
계	203 (100.00)	44 (21.67)	57 (28.08)	52 (25.62)	50 (24.63)

應答者의 教育水準을 보면 大卒 46.30%, 高卒 41.87%, 大學院 卒業 9.85% 國卒 0.99%, 中卒 0.49%, 其他 0.49%로써 應答者의 水準은 大學 卒業者가 가장 많았다. 표 11 參照

표 11. 調查對象者 階級別 教育程度

教育程度 階級	計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大學院	其 他
警 務 官	19 (100.00)			8 (42.11)	7 (36.84)	4 (21.05)	
總 警	184 (100.00)	2 (1.09)	1 (0.54)	77 (41.85)	87 (47.28)	16 (8.70)	1 (0.54)
計	203 (100.00)	2 (0.99)	1 (0.49)	85 (41.87)	94 (46.31)	20 (9.85)	1 (0.49)

應答者의 新중한 판단을 기대하기 위하여 그동안 警察에 勤務한 期間을 調查한 결과 2~5年 3.45%, 5~10年 16.26%, 10~15年 13.79%, 15~20年 12.31%, 20年 이상 54.19%로써 20年 이상 勤務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표 12 參照

표 12. 調查對象者 總 勤續年數

期 間 階 級	計	2~5年	5~10年	10~15年	15~20年	20年 이상
警 務 官	19		3 (15.79)	3 (15.79)	3 (15.79)	10 (52.63)
總 警	184	7 (3.80)	30 (16.30)	25 (13.59)	22 (11.96)	100 (54.35)
計	203	7 (3.45)	33 (16.26)	28 (13.79)	25 (12.31)	110 (54.19)

앞의 調查에서 나타난 應答者들의 가장 많은 比率은 年令이 40代, 學力은 大卒, 經歷은 20年 이상이며, 일선 지휘관인 警察署長(總警), 警察局長(警務官)들이므로 警察을 代表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다. 따라서 설문지에 나타난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必要性이 있다고 본다.

2. 資料室 施設

現 警察局·警察署에 資料室이 있느냐는 질문에 資料室이 “없다”고 대답한 기관은 全體應答 기관 중 73.89% (150 個所)였고, “있다” 25.62% (52 기관) “無應答” 0.49% (1 기관)으로 경찰기관들이 대체로 資料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警察機關 자료실 시설현황 표 13 參照

표 13. 警察機關 資料室 施設

機關別 \ 施設現況	計	있 다	없 다	無 應 答
警 察 局	19	5 (25.32)	14 (73.68)	
警 察 署	184	47 (25.54)	136 (73.92)	1 (0.54)
計	203	52 (25.62)	150 (73.89)	1 (0.49)

3. 資料蒐集事項

資料蒐集 方法에는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 자료를 들 수 있다. 그중 다른 부처와의 資料交換은 자료를 통한 情報交換이 可能하므로 중요한 參考資料로써 活用할 價値가 있다. 그러나 警察機關은 대부분 구입에 依存하는 比率이 전 應答기관 중 51.72% (105 기관)으로 가장 높고 治安本部 및 各 警察局에서 配付되는 資料가 23.15%, 자체 발간물 0.98%, 타기관과의 자료교환은 전혀 “없다”고 표 14 에 나타나고 있다.

표 14. 資料蒐集方法

機關別 \ 蒐集方法	計	구 입	기 증	교 환	상 부 관 청 배 부	자 체 발 간 물	기 타	무 응 답
警 察 局	19 (9.36)	10 (52.63)	5 (26.32)		2 (10.53)	1 (5.26)	1 (5.26)	
警 察 署	184 (90.64)	95 (51.63)	23 (12.50)		45 (24.46)	1 (0.54)	14 (7.61)	6 (3.26)
計	203	105 (51.72)	28 (13.79)		47 (23.15)	2 (0.99)	15 (7.39)	6 (2.96)

다음으로 현재 保有하고 있는 資料의 수에 대해서는 응답기관 203 기관 중 55.66% (113 기관)가 50~200 권이라고 대답하였다. 定期 刊行物은 74.88% (152 기관)가 1~10 종을 구독하고, 年間 資料構入豫算은 58.13% (50 기관)로써 10~50 만원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의 資料保有, 定期 刊行物 구독 종수, 구입예산 現況은 표 15, 표 16, 표 17 과 같다.

표 15. 警察機關保存資料卷數

자료권수 기관별	계	50 200 권	100 300 권	150 500 권	200 1,000 권이상	무응답
警察局	94	10 (52.63)	1 (5.26)	2 (10.53)	3 (15.79)	3 (15.79)
警察署	184	103 (55.98)	24 (13.04)	13 (7.07)	11 (5.98)	33 (17.93)
計	203	113 (55.66)	25 (12.31)	15 (7.38)	14 (6.89)	36 (17.73)

표 16. 各機關別 定期刊行物 구독 종수 現況

구독종수 기관별	계	1~10 종	10~30 종	30~50 종	50 종이상	무응답
警察局	19	15 (78.95)	3 (15.79)			1 (5.26)
警察署	184	137 (74.46)	41 (22.29)	1 (0.55)	1 (0.54)	4 (2.17)
計	203	152 (74.88)	44 (21.68)	1 (0.49)	1 (0.49)	5 (2.46)

표 17. 年間資料構入費 (단위 : 만원)

豫算 機關別	계	10~50	50~100	150~200	200 이상	무응답
警察局	19	9 (47.37)	3 (15.79)	1 (5.26)	2 (10.53)	4 (21.05)
警察署	184	109 (59.24)	17 (9.24)	4 (2.17)	8 (4.35)	46 (25.00)
計	203	118 (58.13)	20 (9.85)	5 (2.46)	10 (4.83)	50 (24.63)

또한 많은 費用을 들이지 않고도 重要한 參考資料를 確保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의 資料交換을 調査하였다. 그 結果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 “원하고는 있지만 資料發刊費用이 적어서 많은 부수의 확보가 어렵다”가 응답자 중 40.40%였다. 그 다음 “業務 特殊性으로 못한다”가 33%, “資料交換 方法을 모른다”가 9.36%, “할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다”가 2.46%, “하고 있다”는 10.84%, “무응답”이 3.94%로 나타났다. 타 기관과의 資料交換 現況調査는 표 18 과 같다.

표 18. 他 機關과의 資料交換

문항 기관별	계	하고있다	하고 싶지만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다.	할 필요성 이 없다	업무특수성 으로 안한다	교환방법 을 모른다	무응답
警察局	19	7 (36.84)	6 (31.58)		5 (26.32)	1 (5.25)	
警察署	184	15 (8.15)	76 (41.30)	5 (2.72)	62 (33.70)	18 (9.78)	8 (4.35)
計	203	22 (10.84)	82 (40.40)	5 (2.46)	67 (33.00)	19 (9.35)	8 (3.94)

이러한 것은 資料交換으로 얻는 정보교환의 重要性을 생각하면 크게 改善되어야 할 점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國立中央圖書館, 국회 도서관, 경찰대학 도서관에 發刊資料 납본규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의 調査에서 “알고 있다”가 전체 응답자 중 43.84% “모른다”가 28.08%, “알고 있으나 실행하지 않는다”가 14.78%, “들은 적은 있다”가 12.31%, 무응답이 0.99%로 나타나고 있다. 즉 警察 機關은 發刊資料를 국립중앙도서관 및 警察大學 도서관에 납본해야 하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發送에 드는 비용과 대외비 등의 자료가 대부분 이어서 자료 납본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납본규정 인지 현황은 표 19 와 같다.

표 19. 자료납본규정인지현황

항목 기관	계	알고 있다	알지만 실행 않는다	들은적 있다	모른다	무응답
警察局	19	11 (57.90)	4 (21.06)	1 (5.26)	3 (15.78)	
警察署	184	78 (42.39)	26 (14.13)	24 (13.04)	54 (29.35)	2 (1.09)
計	203	89 (43.84)	30 (14.78)	25 (12.31)	57 (28.08)	2 (0.99)

4. 資料整理事項

수집된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돌으로써 利用할 수 있는 자료의 機能을 발휘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수집된 자료를 쉽게, 正確히 찾을 수 있도록 整理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教育과 技術을 받은 사람이 必要하다.

現在 警察官署의 자료정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각 과 서무를 담당하는 자가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全體 應答者의 91.63%로 나타났고, 사서교육을 받은 사람은 2.46%, 戰鬥警察 1.97%, 일용직이 0.49%, 기타 0.49%, 무응답 2.95%로 나타났다. 資料整理 方法에 대한 教育 유무의 조사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가 72.90%, “몇시간 배웠다”가 16.26%, “들은적이 없다”가 8.86%, “완전히 배웠다”가 0.99%, 무응답 0.99%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現在 警察機關 資料整理 擔當者는 별로 사서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고, 각 과 서무 담당자가 다른 業務와 겸하여서 資料를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정리 담당자 및 資料整理 方法에 대한 教育정도 현황은 표 20, 표 21 과 같다.

표 20. 資料의 整理擔當者

整理部 機關別	계	각과서무	전문직원	일용직원	전 경	기 타	무응답
警察局	19	18 (94.74)	1 (5.26)				
警察署	184	168 (91.31)	4 (2.18)	1 (0.54)	4 (2.17)	1 (0.54)	6 (3.26)
計	203	186 (91.63)	5 (2.46)	1 (0.49)	4 (1.97)	1 (0.49)	6 (2.96)

표 21. 資料整理法에 대한 教育程度

教育現況 機關別	계	완전히 교육	몇시간 배웠다	받지 않았다	틀은적 없다	무응답
警察局	19		1 (5.26)	16 (84.21)	2 (10.53)	
警察署	184	2 (1.09)	32 (17.39)	132 (71.74)	16 (8.70)	2 (1.08)
計	203	2 (0.99)	33 (16.26)	148 (72.90)	18 (8.86)	2 (0.99)

다음으로 警察機關은 自體에서 생산된 자료가 必要한 參考資料로써 活用價値가 높고 이를 잘 保存하여 두는 것이 重要하므로 자체생산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대해서도 調査하였다. 응답 기관 중 전체 44.33%는 “必要한 秘密資料는 再分類하여 保管하고 一般資料는 期間에 관계없이 保存한다.”고 하였고, 42.36%는 “秘密 및 一般資料는 保存期間이 지나면 廢棄한다”고 하였다. 다만 2.47%는 “秘密資料만 保管하고 일반자료는 廢棄한다”고 하였고, 0.49%는 秘密資料만 保管하고 있다고 하므로써 警察機關 內에서는 全體 護刊資料를 빠짐없이 保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체자료 보관현황은 표 22와 같다.

표 22. 自體資料保管現況

項目 機關	계	①	②	③	④	⑤	⑥
警察局	19 (9.36)	7 (36.84)	10 (52.63)			2 (10.53)	
警察署	184 (90.64)	79 (42.93)	80 (43.48)	5 (2.72)	1 (0.54)	14 (7.61)	5 (2.72)
計	203	86 (42.36)	90 (44.33)	5 (2.47)	1 (0.49)	16 (7.88)	5 (2.47)

- 項 目 : ① 秘密 및 一般資料는 保存期間이 지나면 廢棄한다.
 ② 必要한 秘密資料는 再分類하고 一般資料는 保管한다.
 ③ 秘密資料만 保管하고 一般資料는 廢棄한다.
 ④ 秘密資料만 保管한다.
 ⑤ 其他
 ⑥ 無應答

또한 廢棄되는 資料損失을 막기 위하여 必要한 秘密資料에 대한 現 保安規程을 개정할 必要性 與否를 質問한 결과, 應答者 中 全體 60.10%가 “개정할 必要性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現狀態가 좋다”는 25.61%, “개정할 必要가 없다”가 14.29%였다. “保存期間이 지났더라도 꼭 必要한 秘密資料에 대해서는 教育機關의 도서관 및 資料室은 특수 보안시설을 하여 保管해야 한다”는 대답이 전체 應答者 中 69.95%, “現狀態維持”가 12.81%, “보안감사 때문에 期間이 지나면 소각해야 한다.”는 견해가 9.36%, 무응답이 1.48%이다. 現 保安規程 때문에 자료보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資料蒐集上의 活潑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現 保安규정을 개정할 必要性이 切實한 것으로 보인다. 秘密資料 보존규정의 改正 및 保存 方法에 對한 조사는 표 23과 같다.

표 23. 秘密資料規程의 改正 및 保存方法

保安規程 改正與否 秘密資料 保存方法	계	있 다	없 다	현상 상태 종 다	불가능 하 다	무응답
①	142 (69.95)	99 (81.15)	15 (51.72)	28 (53.85)		
②	13 (6.40)	11 (9.02)	1 (3.45)	1 (1.92)		
③	19 (9.36)	7 (5.74)	3 (10.34)	9 (17.31)		
④	26 (12.81)	5 (4.09)	8 (27.59)	13 (25.00)		
무응답	3 (1.48)		2 (6.90)	1 (1.92)		
계	203	122 (60.10)	29 (14.29)	52 (25.61)		

秘密資料 保存方法에 대한 문항

- ① 教育機關(도서관, 연구실)은 특수보안시설을 해서 보관해야 한다.
- ② 수령기관은 모두 보관해야 한다.
- ③ 보안감사 때문에 期間이 지나면 소각해야 한다.
- ④ 現狀態가 좋다.

5. 資料活用 및 教育

資料는 利用하기 위해서 蒐集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무리 훌륭한 자료를 수집하여 잘 정리, 보관하여도 이것을 活用하지 못하거나 利用하지 않을 때 자료는 그 價値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必要한 자료를 수집할 때 찾을 수 있도록 資料利用法 教育을 받아야만 비로소 有能한 資料活用이 可能해진다. 더구나 情報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는 現代人은 資料를 찾는데 시간과 경비를 많이 소모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규명, 소재확인 등의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한 기관 내에서도 어떤 자료가 어떤 部署에서 생산되는가를 알고 있어야 業務計劃 過程에서도 參考資料로써 活用할 수 있으며 資料蒐集이나 研究에서도 중복을 피할 수가 있다. 警察機關에서는 특수 사항이 다닌 자료에 대하여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별도의 資料室이 없고, 따라서 集中的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관한 情報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전체 응답 중 31.03%이다. “資料管理가 미흡해서 資料에 대한 情報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3.65%, “保安關係로 해당 부서만 안다” 22.66%, “모두 알 수 있다” 19.70%, 무응답이 2.96%로 현재 警察機關은 같은 기관 안에서도 다른 課·係에서 생산되거나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他 部署(課·係)에서 發刊되는 資料에 관한 情報인지 사항은 표 24와 같다.

표 24. 他部署(課·係)에서 發刊되는 資料에 관한 情報認識與否

문항 기관	계	모두 알고 있다	보안관계로 해당부서만 안다	자료실이 없어 모른다	자료정리가 미흡해서 모른다.	무응답
警察局	19 (9.36)	3 (15.79)	8 (42.11)	4 (21.05)	3 (15.79)	1 (5.26)
警察署	184 (90.64)	37 (20.11)	38 (20.65)	59 (32.07)	45 (24.46)	5 (2.71)
計	203 (100.00)	40 (19.70)	46 (22.66)	63 (31.03)	48 (23.65)	6 (2.96)

資料利用法에 관한 調查에서는 “資料를 찾을 때 잘 몰라서 適當에게 물어서 찾았다”는 응답이 全體의 38.92%, “찾기가 어려웠다” 37.93%, “쉽게 찾았다” 10.84%, “잘 몰라서 못찾았다” 1.48%, 무응답이 10.83%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경우 資料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이용법 인식 현황은 표 25 와 같다.

표 25. 資料利用法認識

분항 기관	계	쉽게 찾았다	찾기 어려웠다	담당에게 물었다	잘 몰라서 못찾았다	기 타	무응답
경 무 관	19 (9.36)		9 (47.37)	8 (42.10)			2 (10.53)
총 경	184 (90.64)	22 (11.96)	68 (39.96)	71 (38.59)	3 (1.63)		20 (10.86)
계	203 (100.00)	22 (10.84)	77 (37.93)	79 (38.92)	3 (1.48)		22 (10.8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資料利用法에 대한 教育의 必要性 與否를 조사한 결과 표 26 과 같이 나타났다.

표 26. 資料利用法에 관한 教育의 必要性 與否

분항 계급	계	꼭 필요하다	조금 알고 싶다	필요하지 않다	시간낭비다	무응답
경 무 관	19 (9.36)	7 (36.84)	9 (47.37)	2 (10.53)		1 (5.26)
총 경	184 (90.64)	92 (50.00)	82 (44.57)	5 (2.72)	2 (1.08)	3 (1.63)
계	203	99 (48.77)	91 (44.83)	7 (3.45)	2 (0.98)	4 (1.97)

이들보면 조사대상 중 “꼭 필요하다” 48.77%, “조금 알고 싶다” 44.83%, “필요하지 않다” 3.45%, “시간 낭비다” 0.98%, 무응답이 1.97%로 教育의 必要性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教育의 적당한 時期는 警察신입 교육때가 좋다는 의견이 全體 응답자 중 39.41%, “경찰보수교육때” 28.57%, “職場訓練때” 25.12%, “특별 초청 강연시” 2.46%, 기타 2.96%, 무응답 1.48%였다. 결국 資料利用法 教育은 경찰 신입교육기간이나 경찰보수 교육기간이 적당하다는 意見이 支配的이다. 자료이용법에 대한 教育의 適當時期는 표 27 과 같다.

표 27. 資料利用法 教育時期

문항 계급	계	경찰신입 교육 때	경찰보수 교육 때	특별초청 강연 때	직 장 훈련때	기 타	무응답
경 무 관	19 (9.36)	4 (21.05)	6 (31.58)		7 (36.84)		2 (10.53)
총 경	184 (90.64)	76 (41.31)	52 (28.26)	5 (2.72)	44 (23.91)	6 (3.26)	1 (0.54)
계	203	80 (39.41)	58 (28.57)	5 (2.46)	51 (25.12)	6 (2.96)	3 (1.48)

6. 資料센터 設置에 관한 의견

조사 대상자들의 “警察資料센터” 設置의 必要性에 대한 대답에서는 57.64%의 응답자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있으면 좋겠다” 38.42%, “필요하지 않다” 1.48%, “관심없다” 1.48%, 무응답이 0.98%였다. 階級別로는 경무관의 73.63%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고, 총경은 55.98%였다. “警察資料센터” 설치 운영의 必要性에 대한 調査는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 警察資料센터 設置의 必要性에 대한 調査

문항 계급	계	필요하다	있으면 좋겠다	필요하지 않다	관심없다	무응답
경 무 관	19 (9.36)	14 (73.68)	5 (26.32)			
총 경	184 (90.64)	103 (55.98)	73 (39.67)	3 (1.63)	3 (1.63)	2 (1.09)
계	203	117 (57.64)	78 (38.42)	3 (1.48)	3 (1.48)	2 (0.98)

다음으로 資料센터 설치에 적당한 機關에 대한 조사는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警察資料센터 設置에 適當한 機關에 對한 調査

문항 기관	계	치안본부	경찰대학	종합학교	기 타
경찰국	19	7 (36.84)	9 (47.37)	3 (15.79)	
경찰서	184	49 (26.63)	87 (47.28)	35 (19.02)	13 (7.07)
계	203	56 (27.59)	96 (47.29)	38 (18.72)	13 (6.40)

이 표에 의하면, 경찰대학이 적당한 곳으로 판단한 응답자가 全體의 47.29%이고, 치안본부 27.59%, 경찰종합학교 18.72%, 기타 6.40%이다.

警察資料센터의 設置 單位에 對한 調査는 표 30 과 같아서 各 警察局 單位로 資料室을 두는 것에 24.13%, 중앙자료센터 하나만에 12.81%가 각각 찬성하였다. 표 29 표 30 에서 보면 警察中央資料센터는 警察大學에 設置하고 各 警察局에 資料室을 두는 것이 대체로 좋은 反應을 나타 내었다.

표 30. 警察資料센터의 設置單位

設置單位 機關	계	各 警察국 단위	전국적으로 중앙자료 센터하나	各 警察국자료실 외에 중앙에 자 료실 設置
警察局	19	2 (10.53)	2 (10.53)	15 (78.94)
警察署	184	47 (25.55)	24 (13.04)	113 (61.41)
計	203	49 (24.13)	26 (12.81)	128 (63.06)

그 다음 警察資料센터를 責任지고 運營할 職級에 對한 질문 표 31 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27.09%가 총경 24.14%는 전문 사서가 하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警察職과 전문 사서직을 區分해 보면 전문 사서직이 48.78%인데 비해 警察職은 47.28%로 전문 사서직과 警察職이 약간 비슷하다.

표 31. “警察資料센터”의 責任者의 職種 및 職位調査

責任者 階級	총 계	경 찰 직			전 문 직			기 타	무응답
		경무관	총 경	경 정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경 무 관	19 (9.36)		3 (15.79)	3 (15.79)	3 (15.79)	5 (26.32)	5 (26.31)		
총 경	184 (90.64)	9 (4.89)	52 (28.26)	29 (15.76)	14 (7.61)	44 (23.91)	28 (15.22)	7 (3.81)	1 (0.54)
계	203	9 (4.43)	55 (27.09)	32 (15.76)	17 (8.38)	49 (24.14)	33 (16.26)	7 (3.45)	1 (0.49)

警察資料의 보다 빠른 발간과 자료소재를 迅速하게 알 수 있고, 資料 配付도 日원화를 위한 警察印刷所를 설치하므로써 경찰종합목록 작성도 容易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必要性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警察印刷所設置 및 警察綜合目錄의 必要性調査

분항 기관	警察綜合目錄 의 必要性		①	②	③	④	⑤
	警 察 局	있 다	19 (47.37)	9 (47.37)	9 (47.37)	1 (5.26)	
警 察 署	있 다	180 (97.82)	88 (47.82)	25 (24.78)	59 (32.06)	8 (4.34)	
	없 다	4 (2.18)					4 (3.18)
計		203	97 (47.78)	34 (16.76)	60 (29.55)	8 (3.94)	4 (1.97)

- 분항: ① 印刷所를 設置하여 全國警察綜合目錄을 作成하고 配付基準도 日원화된다.
 ② 印刷는 제각기하고 發刊資料만 자료센터에 납본한다.
 ③ 警察印刷所를 設置하고 경찰병원처럼 운영한다.
 ④ 施設維持費로 豫算이 더 소요되므로 現 狀態가 좋다.
 ⑤ 緊急을 要하는 業務가 많으므로 불가능하다.

警察局에서는 응답자 모두가 이의 必要性을 認定하는 반면, 警察署는 97.82%만이 必要하다고 생각하였고, 2.18%는 必要없다고 응답했다. 印刷所를 설

치하면 印刷經費를 節約할 수 있고, 全國警察綜合目錄 작성이 容易하며 또한 配付基準도 一원화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에 전체 응답자 중 47.18%가 贊成하였다. 印刷所 運營은 경찰병원처럼 일반인들에게는 印刷費用을 받고 警察官署 發刊費는 警察豫算에서 充當한다는 의견은 29.55%, 현 상태가 좋다는 의견은 3.94% 밖에 되지 않아 警察印刷所의 必要性을 전반적으로 認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3. 調查結果의 要約

1. 活用할 수 있는 資料의 貧困狀態와 關聯되는 가장 根本原因은 각 경찰관서에 資料를 保存할 수 있는 資料室 施設이 없어서 자체자료 마저도 보관하지 못하는 것이다.

2. 警察資料 중 重要자료가 秘密資料 속에 많이 包含되어 있고, 이러한 資料는 保存期間이 지나면 즉시 파기해야 하는 현 보안법 규정이 자료보존상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警察官들은 資料의 蒐集과 정리, 그리고 活用に 대한 知識이 부족하여 效率的인 資料蒐集 方法과 利用方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각 관서에 資料를 전달하는 人力이 없고, 資料管理에 대한 檢査등 行政體制가 되어 있지 않다.

5. 警察機關內에 있는 資料의 情報도 알지 못하여 活用に 어려움이 많으며 심지어 같은 機關에서도 資料소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警察機關은 다른 部署와 資料交換 및 다른 도서관 이용도 거의 없는 현상이다.

7. 자료전담기구로서 각 警察局에 資料室을 두고, 나아가 중앙자료센터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체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資料管理 活用に 대한 教育을 원하고 있으며, 時期는 警察 新임교육기간 또는 보수교육기간을 원하고 있다.

Ⅳ. 警察資料센터 設置에 關한 構想

1. 資料센터의 機能

警察資料센터는 研究者, 研究結果의 利用者, 그 밖에도 警察行政格務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情報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行政管理組織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 아래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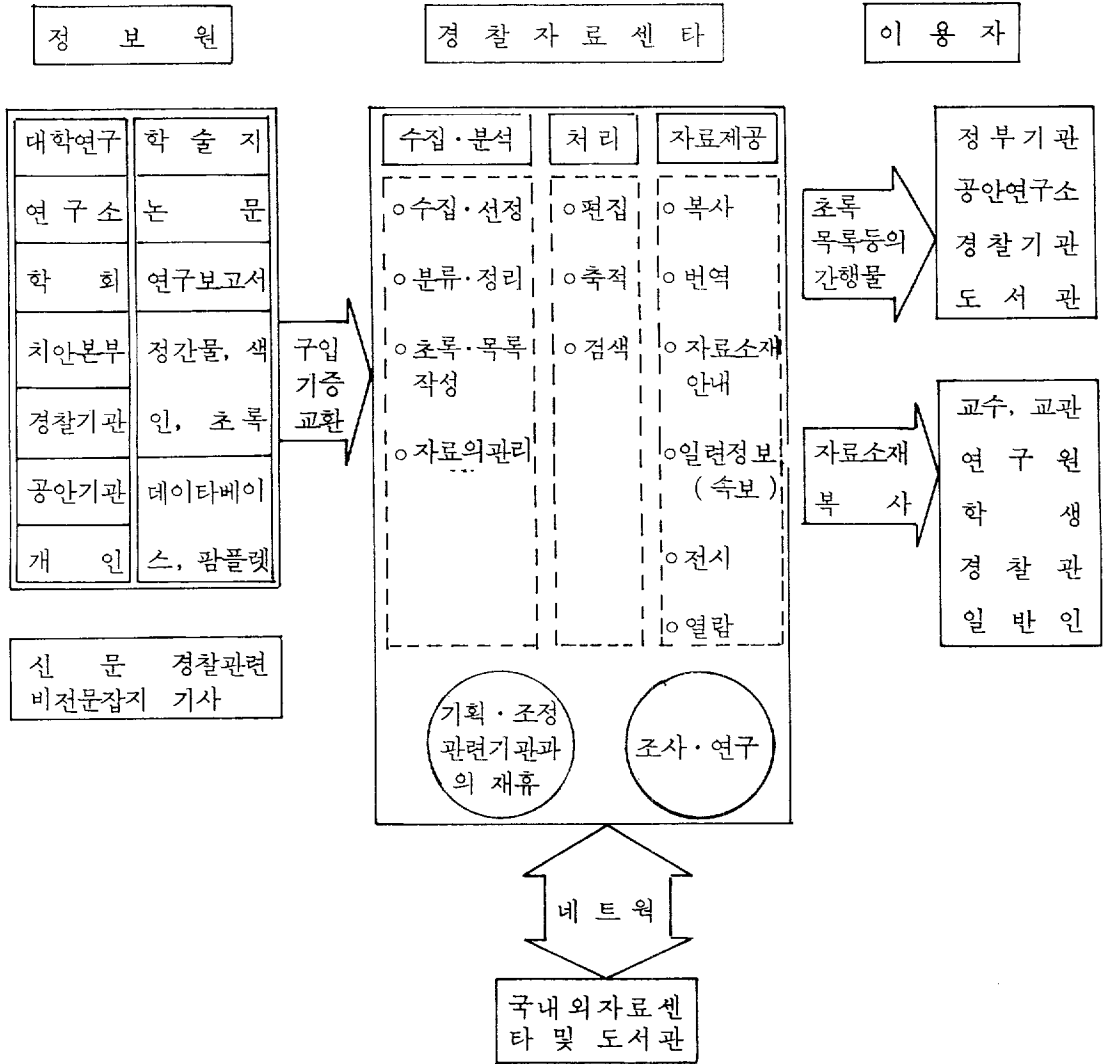
첫째, 國內外에 산재되어 있는 警察業務와 關聯된 각종 文獻資料(단행본, 보고서, 정기간행물, 회의자료, 색인, 초록, data base, 팜플렛)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둘째, 蒐集된 資料를 검토하여 選擇하고 分析을 통하여 요약, 기술 하므로써 利用者들이 보다 편리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색인, 초록, 要約한다.

셋째, 警察에 關한 研究結果를 包含한 各種資料 및 情報를 治安對策 研究, 그리고 教育資料 등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配右, 支援하는 일이다.²⁹⁾

이러한 機能은 앞의 2장에서 소개한 캐나다 法執行 參考센터(Law Enforcement Reference Center)의 機能과 같이 全國 警察機關, 公안기관(검찰, 교도 행정, 법원) 교육연구기관의 協力을 통하여 圓滑한 정보소통을 강화하여 治安本部의 各 業務機能과 警察大學 및 教育機關의 資料 提供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警察資料센터의 情報流通 體制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 과 같다.



資料： 오진석 (1981), 教育資料情報센터 設置運營方向”, 「教育開發」, 13 권 8 호, p.28 參照, 재작성

그림 1. 警察資料 Center 의 情報流通體制

2. 警察資料센터의 組織

警察資料센터 組織은 그 機能을 合理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組織은 運營체제를 中央集中的 體制로 運營할 것인가, 혹은 分散적 체제로 運營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나 우리는 現實的 條件을 檢討한 후 적합한 체제를 選擇하는 과정이 必要하다. 그 구성방법은 教育 發展程度, 人的·物的資源 그리고 國家的 水準에서의 資料情報을 蒐集하고 奉仕할 수 있는 責任을 가진 資料센터의 存在與否, 國家的 혹은 기관 수준에서의 特殊한 必要와 條件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몇가지 제안을 구상해 보면

<제안 1 >

警察資料센터는 警察資料를 蒐集·分析하고 모든 關聯機關 利用者에게 이들 資料를 直接 配布하는 警察資料센터를 中央集中的으로 한 곳에만 設置 運營하는 경우

<제안 2 >

各 地域別 해당 警察局의 단위로 資料를 提供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警察資料센터를 設置·運營하는 경우

<제안 3 >

中央集中的 水準의 警察資料센터가 存在하면서 각 警察局 單位에는 자체 資料室을 두어 中央警察資料센터와 유기적으로 關係를 맺는 組織으로서 運營하는 경우 등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세가지 형태 중 <제안 1 >은 中央集中的 運營體制이며 <제안 2·3 >은 分散적 運營체제이다. 分散적 運營체제로서의 <제안 2 >와 <제안 3 >의 차이는 <제안 2 >가 利用者의 지리적 편의 및 效果的인 意思소통의 가능성을 크게 고려한 반면 <제안 3 >은 경찰관련 자료의 광범위한 蒐集, 情報持援의 質을 높이고 원거리 이동의 불편과 또한 상대적인 地域資料센터의 資料貧弱을 모두 充足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제안 1 >은 모든 직권을 일관성 있는 管理體制 아래에서 통제할 수 있는 利點 以外에도 運營費의 節減, 文獻管理의 迅速化·集中化 등 상당한 利點을 갖고 있다. 그러나 資料에 대한 여러가지 情報에 專門的인 知識을 갖고 있는 人力을 確保하지 못하거나, 情報을 提供하고 利用하는 機關과 個人間의 組織的인 協助體制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또는 기관장의 情報 전달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경우에는 운영이 불편하게 된다. 한편 <제안2>는 資料와 情報을 제공하고 利用하는 기관과 個人이 地理的으로 원거리에 있으므로 해서 發生할 수 있는 의사소통, 정보교환의 非効率性을 배제하고, 利用에 편리하지만 자료관리가 집중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없으며 각도 자료센터마다 必要한 豫算·人力·施設의 確保가 어려우므로 자료 수집상의 미비한 점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같은 현실적 여건을 볼 때 警察機關 行政組織의 피라밋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치안본부의 지시가 각 시도 경찰국까지 直接 전달되는 중앙집중적 장점과 절충시키는 <제안3>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警察史 變遷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미군정시대의 가장 民主的인 공보실기구 表5 참조와 같다고도 할 수 있고, 警察資料센터 설치단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表3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제3안에 의하여 중앙집중적인 자료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치안본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警察大學 도서관의 機能을 확장시켜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관하여 警察資料센터 설치기관의 조사에서 表29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47.29%가 警察大學, 27.59%가 치안본부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기관에 자료센터를 설치할 경우 각기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治安本部에 警察資料센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첫째, 治安本部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면 全國 경찰국에 통일된 조직구조가 可能하다.

둘째, 治安本部의 우수한 통신망을 이용하면 기관 및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이 신속·정확할 수 있다.

셋째, 交通이 편리하여 수시 이용이 可能하며 資料 수집 및 전달에 있어서 全國의 일일 문서수발 채송자를 활용할 수 있다.

네째, 人力을 흡수하여 새로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資料 生産화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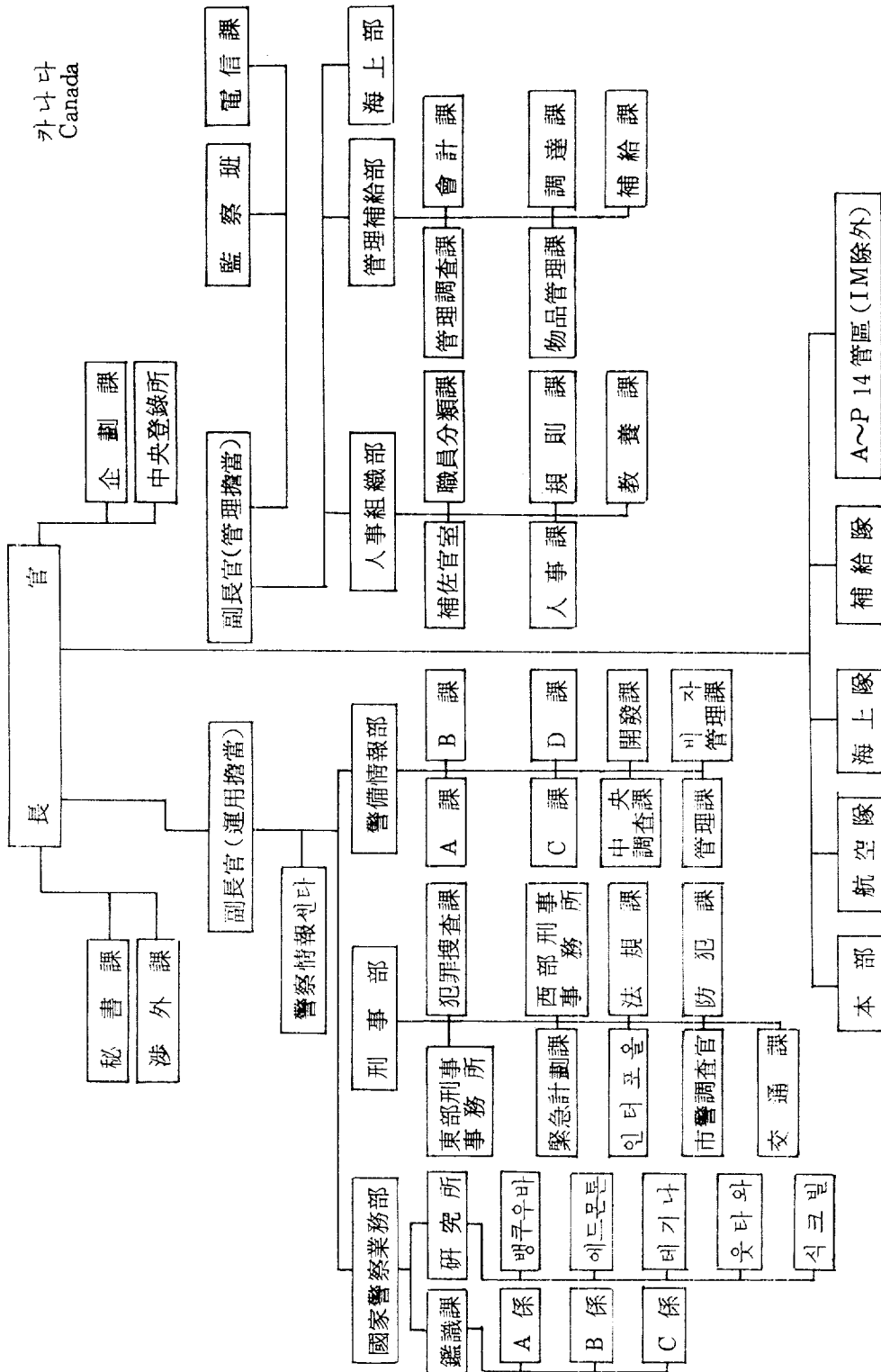
다섯째, 治安本部는 각 경찰국의 上級機關이므로 자료발본, 자료정리, 보관 및 활용 등에 대한 협조·지도·감독 제제가 可能하다. 이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시설과 운영할 전문사서 확보상의 問題가 있다.

한편 警察大學 도서관을 확장시켜 警察資料센터 業務를 擔當할 경우에는 이미 確保된 施設과 運營을 擔當할 수 있는 전문사서를 活用할 수 있으나 警察大學이 각 경찰국의 직속 上級機關이 아니므로 資料蒐集 및 보관에 다른 行政力이 全國 경찰기관에 미치는 影響力이 미약하다. 더욱 重要한 것은 警察大學이 位置上으로 자료이용, 자료수집, 전달 등에 있어 治安本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하여 資料센터의 活成化를 기하기 어렵다.

이러한 두 機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설문지 결과는 警察大學 도서관이 경찰자료센터 기능을 擔當하기에 적당한 기관이라고 나타났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治安本部 직속으로 채택하는 것이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그림 3에 서 비교해 보아도 바람직 하다고 본다. 그리고 警察大學의 治安研究所, 治安本部 企劃管理 發展研究課, 治安本部 電字計算所, 治安本部 감식과의 감식자료관리 등을 흡수하여 “警察資料센터”를 신설한다.³⁰⁾ 소장은 경무관 또는 3급으로 보하며 보조기관은 警察發展研究室(장은 총경), 文獻管理室(4급 사서관), 情報研究室(4급 사서관), 電算室(전산 서기관) 警察印刷所(경감), 서무·회계(경감) 등을 둔다. 그리고 警察發展 研究室 研究員들이 자료선정위원을 겸하므로써 효과적인 자료선정을 하도록 한다. 또한 각 警察局 資料室을 각 국장 직속기구로 하고, 사서교육을 받은 직원 1명을 배치하여 자료수집, 보존·활용 擔當하게 한다.

특히 각 경찰관 소속기관의 발간자료들은 빠짐없이 蒐集하여 보존 活用하고 5부씩 “警察資料센터”에 납본하도록 한다. 警察資料센터 설치기구 모형은 그림 2, 그림 4와 같다.

30) 성희구(1983), 「韓國警察기구에 대한 研究」, 앞글, p.82. 참조



7. 3. 1. 正立기타다 騎馬警察組織圖
 자료: 치안국 기획과, 역 (1969), 「제외국의 경찰제도」, p.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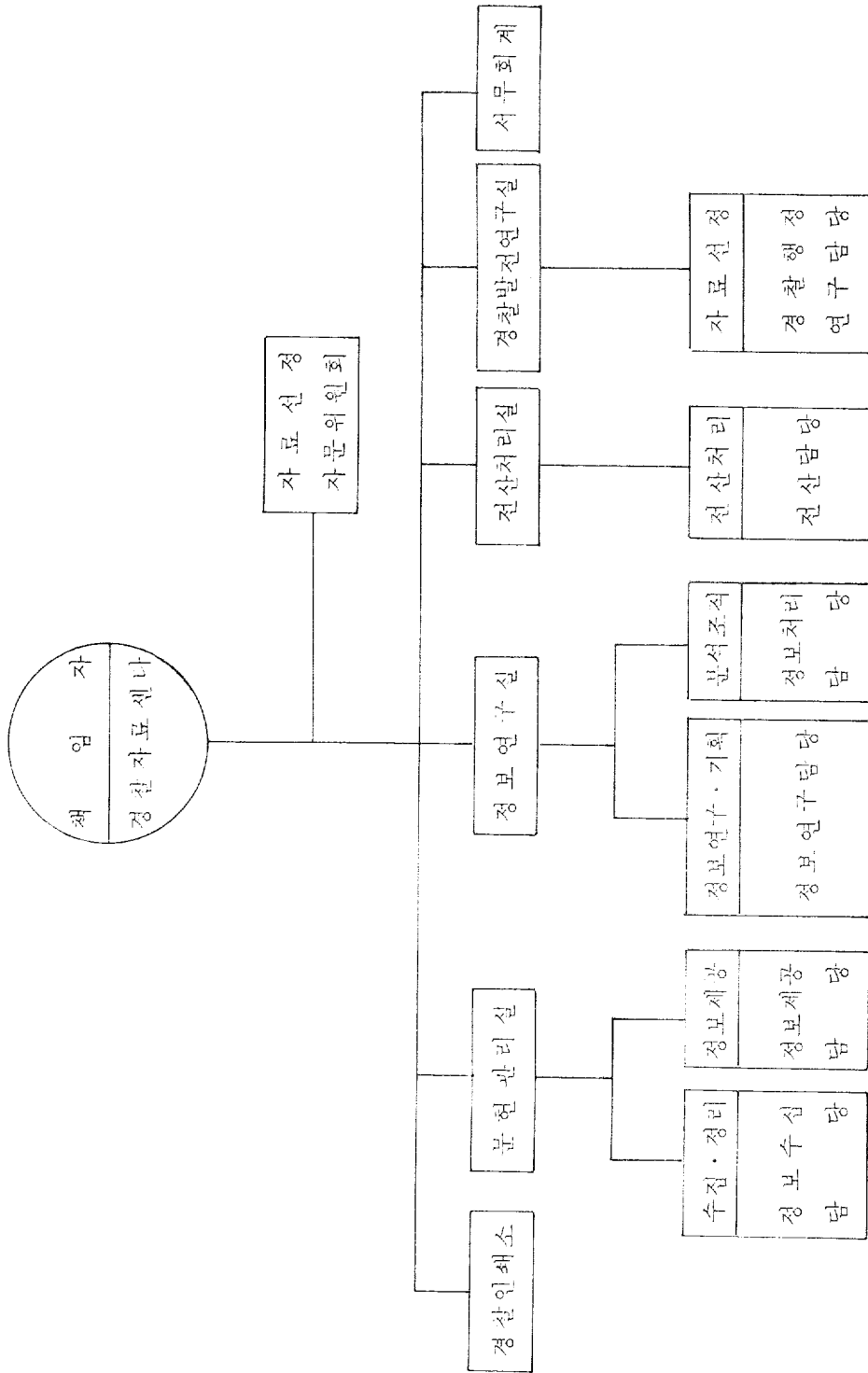


그림 4. 警察資料센터組織機構模型圖

3. 警察資料센터의 運營

警察資料센터는 < 제 3의 제안 >으로 설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計劃이 있어야 한다.

1. 人 員

警察資料센터의 責任者는 앞으로 業務의 重要性으로 보나 警察機關 다른 부서 및 타기관, 도서관과 자료센터와의 상호협조적인 유대 및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경무관으로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 機能別로 研究擔當者를 두어 責任者를 보좌하게 하며 문헌관리실은 번역사 1명을 배치하여 경찰관계 外國文獻을 번역하게 한다. 그러나 人力確保는 해양·통신경찰직과 같이 機能職 경찰관을 채용하는 方法과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機能職 경찰관으로 하는 경우 보직, 승진의 기회가 일반행정 경찰관들과 같이 되기 어렵고 一般 研究職으로 勤務할 경우 組織納의 소외감과 업무협조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므로 機能職 경찰관으로 채용하고 機能에 따른 연구수당을支給하므로써 보수 및 승진에 대한 不滿을 해소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警察資料센터 및 각 警察局 資料室 勤務者는 사서 및 電算에 대한 教育을 必須的으로 받도록 하여 警察資料센터 業務에 있어 全體的인 이해를 하도록 訓練시켜야 한다.

2. 資料蒐集

資料의 蒐集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많은 자료를 중에서 경찰기관에 가치있는 것을 선정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警察研究에 도움이 되는 研究報告書, 論文, 기사, 刊行物, 會議資料, 색인, 초록, 단행본 등을 國內外 研究機關, 團體, 個人 등 資料의 出處로 부터 蒐集한다. 이러한 蒐集은 蒐集計劃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자료선정 및 수집방법등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蒐集한다. 수집방법은 구체적으로 교환, 기증, 구입을 통하여 하고, 경찰관서에서 생산되는 發刊物은 각 警察局에서는 소속자료를 각 경찰국 자료실에 빠짐없이 보관한다. 그리고 자체기관 발간물 5부씩은 警察資料센터에 납본하도록 한다. 그리고 治安本부와 서울特別市 警察局의 경우는 <表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機關의 발간자료가 전국경찰기관 발간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警察印刷所를 서울에 설치하여 활용하면 印刷費用이 절감되고 이곳에서 나오는 발간물을 망라적으로

蒐集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료기증은 경찰관계연구·학위논문 등을 가진 個人 및 機關에 기증 의뢰를 발부하고 해외출장이나 教育後 보고서제출을 의무화하는 총무처의 공심제를 채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³¹⁾

圖書購入은 警察資料센터에서 일괄적으로 購入하여 자료실에 정리·배부하고, 각 警察局 자료실의 신문·잡지 구독료만 支拂하면 구입예산이 절감될 것이라 본다. 또한 자료교환은 많은 費用을 들이지 않고 좋은 참고자료를 蒐集하는 방법이다. 앞의 타기관과의 자료교환 調査 表18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警察機關은 다른 기관과 자료교환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원인은 예산부족으로 많은 부수를 발간하지 못하거나, 업무상 자료교환을 할 수 없는 특수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자료교환을 하므로써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有益한 情報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올바른 治安對策을 위하여는 國內外의 다양한 資料交換이 必要하고 國際警察機構를 통한 資料交換 내지 犯罪搜查 公조체제는 더욱 強化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³²⁾

특히 캐나다의 법집행 참고센터(Law Enforcement Reference Center)와 같은 도서관과 국제적으로 資料交換을 하고, 國內의 公안기관과도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수집, 공동활용은 중요하고도 價値있는 자료수집 방법이다. 이러한 資料蒐集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31) 공심제: 1971.4.1. 大統領令 第7586號 第9條의 2에서 “공무국의 旅行規定 - 外國 資料蒐集”, 에 의거하여 ① 公務員의 해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총무처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要請에 따라 공무국의 여행자에게 外國資料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② 資料蒐集에 必要한 경비는 蒐集을 요청한 수요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大國民國現行法令集」, 제 2 권, p. 605-2

32) 國際警察(International police). ① 평시에 個人의 國際犯罪를 방지하기 위한 각 國家의 행위 ② 국제관계를 가진(가항수로의 제도에 관한 조약) 국제하천위원회가 행하는 하천의 경비활동 ③ 집단적 안전보장체제 아래에서 國家의 侵略行爲에 대한 다른 각 國家들의 공동적인 방위행동 및 진압활동, 즉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의 集團的 안전보장제도하에서 이루어진 강제조치는 그 전형이다.

동아출판사(1982),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서울), 제 4 권, p.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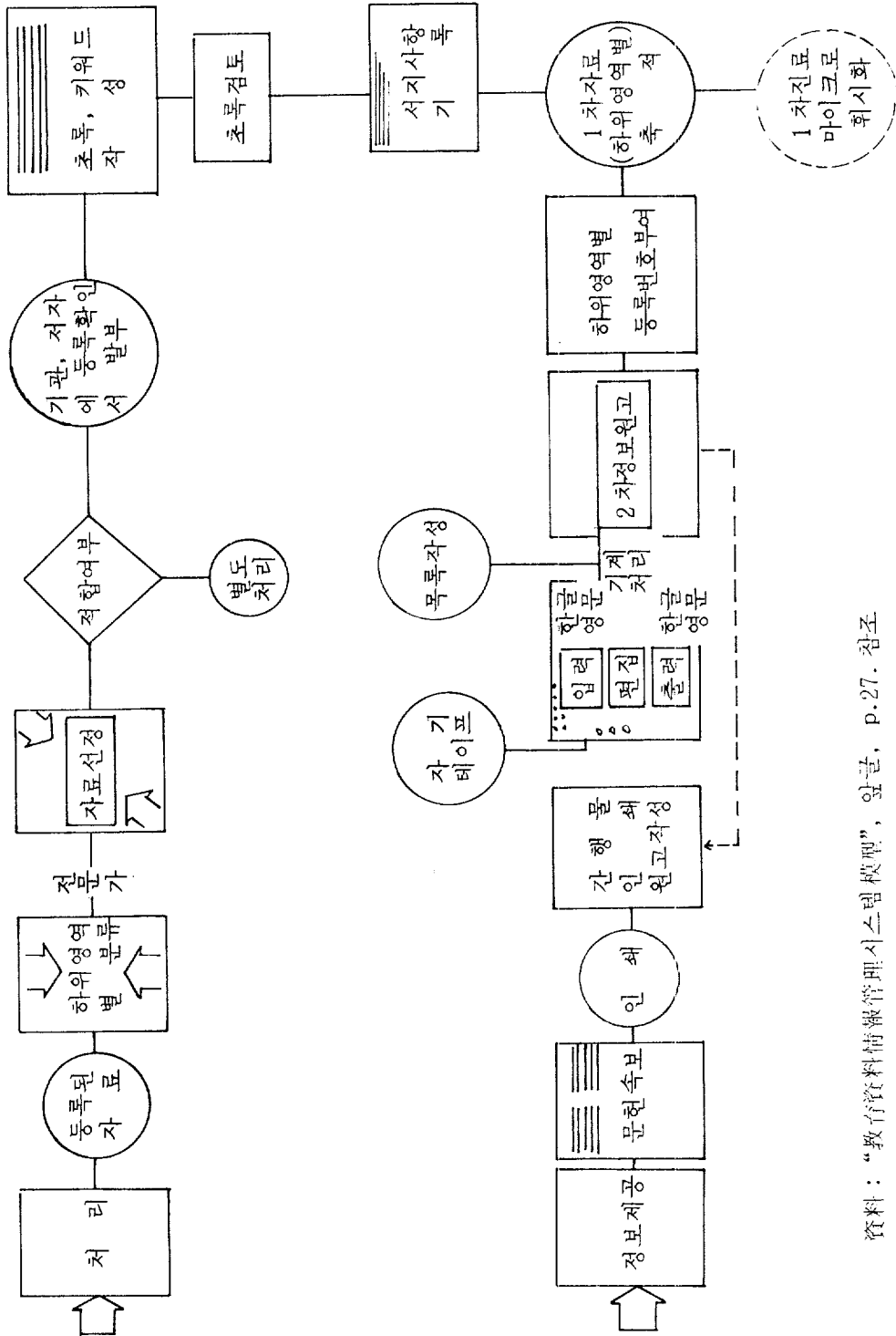
자료의 처리는 蒐集된 자료가운데 가치있는 것을 選定하여 組織·分析過程을 통하여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처리한다. 處理過程에서는 자료분류체계표에 의하여 분류하고 선정과정을 통하여 색인작성, 주제분석, 초록작성 등의 作業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목록 혹은 기타 여러가지 형식의 작업분석카드(Work sheet)는 문헌속보 등 신속한 정보소재 案内를 위한 2차 資料의 편집 및 마스터화일 구성을 위한 date base의 전산화입력용 원고로 사용한다. 資料情報 處理過程을 도시화하면 다음 그림 6과 같다.³³⁾

그림의 處理過程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蒐集된 자료는 형태별로 분류되어 수사대장에 등재된 후에 處理擔當者에게도 전달된다. 전달된 자료는 경찰자료분류체계표에 따라 분류한 다음 자료선정을 위해 위촉된 영역별 전문가에게 資料分析 차드를 添附하여 전달하면 영역별 전문가는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자료선정기준에 의거하여 檢討한 후 선택 가치가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 다른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資料로 분류된다. 선택가치가 있는 資料는 초록작성요강과 keyword작성지침을 考慮하여 秒錄과 keyword를 작성하여 處理擔當者에게 송부된다. 선택가치가 없는 자료는 資料와 資料分析카드를 별도로 수합하여 폐기자료대장에 記錄한 후 폐기시킨다.

다른 하위조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資料는 處理擔當者가 수합한 후 관련영역 전문가에게 보낸 후 설명한 節次를 밟도록 한다.

그리고 選定된 資料는 저자 혹은 기관해당자료의 登錄事實을 알리는 서한을 발한다. 선정된 資料別로 作成된 秒錄과 키워드 處理擔當者의 檢討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지사항중 누락사항을 記錄한 후 하위영역별 記錄番號를 부여한다. 이때 1次資料는 必要한 內容을 기술한 후 하위영역별 등록번호 순으로 서가에 축적된다. 秒錄 keyword 등 서지사항이 기록된 作業分析카드는 2차 정보원고로서 활자로 정리되어 목록으로 정리되고 그 부분은 마스터화일 構成을 위한 전산화 입력원고로 사용한다. 警察研究資料 및 경찰관계 학술잡지의 기사색인초록, 문헌속보 등의 출판인쇄원고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作成한다.

33) 研究資料室(1981), "教育資料情報管理시스템 模型", 「教育開發」, 제 13호, 8권, pp. 25~28.



資料：“教育資料情報管理시스템模型”，앞글, p.27. 참조

그림 6. 資料情報處理過程

그리고 處理擔當者는 選定된 資料別 키워드중 새로운 용어와 수정이 必要한 용어를 判別하여 마스터화일의 수록용어를 새로운 용어를 바꾸거나 용어집 (thesaurus)을 개정하는 作業을 계속해 나간다.

4. 資料의 제공

蒐集·處理된 資料로 定期的으로 이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警察研究資料 및 경찰관계 학술지, 기사색인·초록집 그리고 이들 2차자료를 수록한 자기테이프를 제작 배포한다. 또한 질의에 대한 정보검색, 소급조사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해 정보소재를 단말장치의 display를 통하거나 목록을 秒錄카드 形態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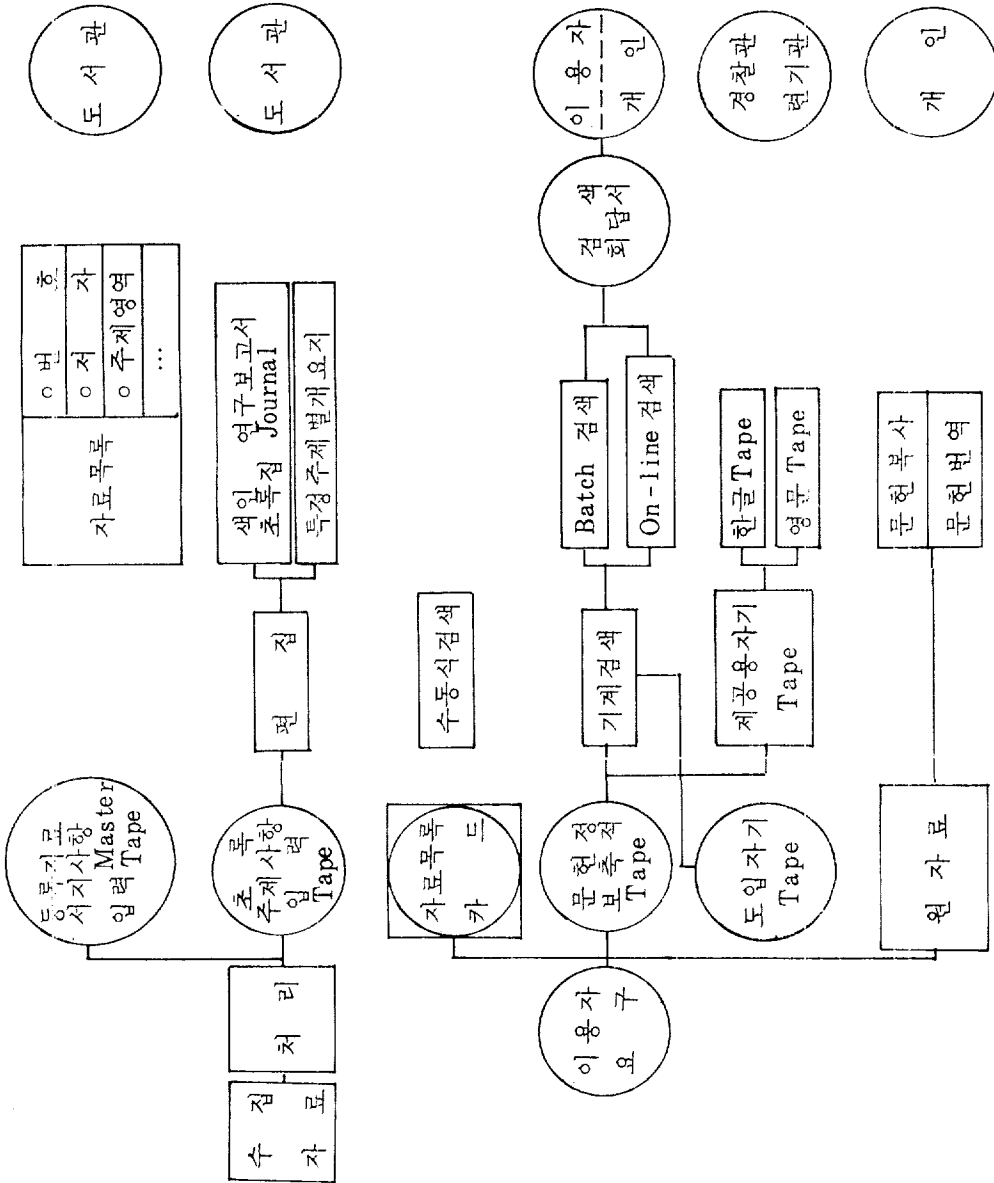
警察分野의 특정주제 혹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역에 대한 研究現況 및 動向을 分析한 개요지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수집된 자료중 새롭고 비중있는 資料는 복사하여 관계분야 전문가에게 배포한다. 이 외에도 발전적으로 警察資料의 원문을 마이크로화시화하여 外國語로 된 資料는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資料의 소재만을 알려주는 소극적 자료제공으로부터 이용자가 관심있는 分野에 보다 能動的으로 接近할 수 있도록 경찰관계 하위영역별 해당전문가, 연구기관 등에 관한 자료도 제공한다.

資料의 제공은 크게 나누어 利用者의 要求에 의한 資料提供과 警察資料센터에서 利用者를 위하여 提供하는 자료제공으로 區分할 수 있다. 다음에 警察資料센터에서 提供할 수 있는 資料를 열거하면

- 警察資料 目錄集(저자별, 주제별, 번호별)
- 警察資料 索引·秒錄集
- 警察關係 記事索引·秒錄集
- 警察關係 主題別 研究評價紙
- Newsletter, 學會紙를 통한 최근 研究 動向 및 重要 情報 소개
- 學術雜紙 目次速報
- 文獻複寫
- 文獻翻譯
- 원문 마이크로화시 提供
- Batch 혹은 On-line, 目錄 혹은 秒錄카드 形態로 질의에 대한 자료검색 및 자료소재 제공
- 자기 Tape

以上과 같은 資料를 대강 들어 보았으나, computer를 利用한 자료축적 및 검색이 기법이 많이 開發되어 보다 편리한 資料 提供이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각 警察局에 비치되어 있는 팩시밀리를 활용하면 자료활용의 効 果는 더욱 더 증대될 것이다.



資料：“教育資料情報管理시스템 2 模型”，안글, p.28. 참조.

그림 7. 資料情報의 提供過程

V . 結 論

앞으로의 새로운 社會는 情報야말로 戰略적인 資產으로 評價되는 時代에 살게 된다. 유일한 資產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가장 重要한 資產인 것이다. 그러나 情報는 資料를 토대로하여 生産되므로 資料를 잘 보존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先進國을 向한 지름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6年 大統領 年두교서에서 情報社會에 대비한 圖書館事業의 積極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圖書館法 개정은 올해 안으로 지상보도가 발표되어 모처럼 종사자들에게 希冀을 주고 있다.

警察組織圖 경찰자료 보존의 변천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日帝時代나 美軍政時代에는 현재의 도서관 機能이나 자료센터 機能은 아니지만 日帝時代는 도서관과 전국기구에 다른과의 기능과 같이 있었고, 美軍政時代에는 공보실이 美軍政의 직속기구로 전국경찰기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警察圖書 出版協會」가 出版事業과 더불어 도서관 業務를 겸하면서 수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舊 政府의 시책과는 달리 경찰기구가 확장되고 해방이된지 40여년이 지나면서 도서관 및 「警察出版協會」는 없어지고 자료 보존 行정은 教育機關 圖書館을 제외하고는 경찰전문자료의 보존기구나 圖書館 機能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것은 情報化時代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社會變化에 따른 각종 知能犯罪, 大規模 國際行事を 위한 警호업무, 學閥事態 진압을 위한 경비대책, 情報產業에 뒤따른 컴퓨터 조작범죄, 올림픽 경기에 선종사기범의 增加는 治安業務를 어렵게 가중시키고 있어 자료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원은 더욱 要求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잘못된 자료관리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면

1. 資料를 蒐集할 전담기구가 없어 警察組織內에 자체기관의 자료마저 일괄적인 자료보존이 되지 않고 있다.
2. 자료수집은 구입에만 의존하고 상호교환 및 자체 생산자료 보존에 積極적인 노력이 없다.
3. 자체기관 및 상부기관의 생산자료중 비밀, 대외비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一般資料로 분류하여 保存하지 않고 감사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保

存期間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있다.

4. 資料管理에 있어 각 警察官署에는 資料室 및 전담 인력이 없고 資料室 保存 및 활용지도를 할 계기가 되어 있지 않다.

5. 資料活用에는 警察機關內에서 生産 발간하는 종합목록이 없으므로 生産資料 소재도 알 수 없을 뿐아니라 심지어 같은 機關內에서 발간된 資料조차 모르고 있다.

6. 資料活用 教育은 資料蒐集 및 活用に 대한 教育을 받지 않으므로써 資料의 중요성이나 수집활동에 대한 理解와 協助가 부족하며 이용방법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자료정책을 수정하고 業務의 効率化를 위한 방안으로 中央에 “경찰자료센터”를 설치하고 각 警察局에 까지 資料室을 설치하여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자료센터”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이 提言하고자 한다.

1. 경찰자료센터는 치안본부장 직속기구로 하고 전산실, 감식자료, 기획 관리관실 發展研究課, 警察大學 治安研究所 등을 통합한다. 그리고 文獻室, 情報研究室, 서무·회계, 警察發展研究室, 電算處理室, 警察印刷所 등으로 구성한다.

2. 경찰자료센터의 총 責任者는 경무관 및 3급으로 보하고 각실의 責任者는 分野別로 警察職 및 전문인력(전산, 사서직, 인쇄)을 確保한다.

3. 각 警察局에는 각 국장 직속으로 資料室을 두고 사서교육을 받은 警察職 및 一般職 1명을 배치한다. 이들은 각 警察局과의 資料交換, 資料蒐集으로 자체 기관 직원들에게 자료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기간내 발간자료는 5부씩 “警察資料센터”에 납본한다.

4. 경찰인쇄소를 설치하여 治安本部, 서울시 警察局은 이 施設을 이용하여 자료들을 빠짐없이 “警察資料센터”에 납본하도록 한다.

5. 資料蒐集에 있어 경찰기관 및 다른 기관의 비밀자료라도 必要한 資料라면 保存期間이 끝난후 一般資料로 분류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반드시 保存하도록 資料선정위원회에서 통보한다.

6. 警察資料센터는 警察資料 綜合目錄을 만들어 각 기관에 배부하도록 한다.

7. 경찰자료센터는 되도록 國內외의 관련기관과 상호협조체제를 이룩하여 資料蒐集, 공동이용을 증진하도록 한다.

8. 資料의 活用을 위한 教育을 警察과 신입교육 期間에 實施하여 이들의 자

료이용 및 蒐集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9. 警察業務의 改善·對策樹立 등을 위한 여러 重要會議에 警察資料센터 責任者는 꼭 참석시킨다.

10. 資料의 납본, 열람을 원할히 하고 종전의 폐습을 막기 위하여 警察資料센터 열람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지위를 막론하고 인사에 반영시키는 制度를 정한다.

以上の 이러한 방법으로 “警察資料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면 앞으로 警察資料의 貧困은 해결될 뿐 아니라 効率的인 業務를 研究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資料保存·活用に 대한 행정지원은 전시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계속 投資와 努力이 소요되므로 어려운 일인것은 틀림없지만 앞으로의 社會는 豊富한 資料保存을 하는 國家나 機關이 發展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경찰기관내에 “警察資料센터”설치 및 운영을 재삼 촉구하는 것이다.

A B S T R A C T

"A STUDY ABOUT INSTALLATION AND OPERATIONS
OF KOREA POLICE MATERIALS CENTER"

Cho, Jung Kang.

In modern society all types of materials are urgently needed to produce information and distribute it to the people who are in need.

As the social demand of the police increases, th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police for the people and up-to-date information within easy access of them should grow as well.

No doubt, the diverse dimensions of knowledge concerned with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aspect of community life, are desirable on the part of police force.

This could be partly solved through the systematic accumulation of all types and forms of materials.

Presently, however, there is no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acquisition of materials and producing and distributing informations for police administration, policy-making, and education of qualified police personnel.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historical description of the development of collection and use system during 40 year history of the police.

The latter part represents the result of the survey and interview regarding the situation of police information needs and activities as well as suggestions for systematic development of resources centers in the future.

The general findings of the survey investigation are as follows:

- (1) Two hundred three police institutions investigated were lacking rooms for their materials, and it is often the case with them not to collect and preserve the materials that have been produced within their own institutions.
- (2) Each institution maintains between 50 to 200 items, mainly distributed by the upperlevel police institutions
- (3) Annual budget for collection is, at best, 500,000 to 1,000,000 won and no exchange of materials occurs between institutions.
- (4) Accumulatio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aterials are usually performed by the ordinary policemen who had no special training for those jobs. The investigation indicates the need for a regular and systematic library education during police education period.

A material room, small it may be, should be available at

every police bureau and A police Materials Center at the Police Headquarter.

- (5) Another factor that discourages sometimes the police institutions from collecting and preserving the various materials is from the fear of mistakenly releasing the classified materials to the unauthorized users.

Several suggestions are recommended to overcome the great deficiency in materials for the police use.

- (1) A police Materials Center be established on police Headquarter,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chief of police.
- (2) A material room be established at every Police Bureau,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Material room and the police Materials Center should be systematically arranged.
- (3) An independent publishing house be established to deal exclusively with materials related to police and at least one copy of them be automatically sent to the Police Materials Center.
- (4) Every institution may keep all the materials of it's own production. Any classified material is referred to the appropriate office for consultation as to the preservation and use. Those materials may be used by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so that they may also contribute to the collection.

This will contribute to maximizing the utilizability of materials.

- (5) Training for information management be given to the policemen during their regular education.
- (6) The Head of the Police Materials Center be allowed to attend the important meetings, and will be expected to provide relevant materials and needed information.
- (7) The Police Materials Center will distribute new and up-to-date materials lists as well as materials themselves to every relevant police institution.
- (8) The result of the library managemen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personnel evaluation.

參 考 文 獻

- 강준호 (1976), “特殊圖書館 發展을 위한 圖書館 政策”, 「국회 도서관보」,
제 114 권, 제 3 호, pp.24-30.
- 권기원 (1977), “정보의 相互協力을 위한 네트워크 模型에 관한 研究”, 「도서관
학 논집」, 제 4 권, 12 호, pp.39-60.
- 권영구 (1978), “特殊도서관과 학술, 연구잡지 출판사와의 經濟的 상호작용”,
「情報管理 研究」, 제 11 권, 1 호, pp.14-18.
- 김경일 (1969), 「特殊圖書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p.13.
- 김영희 (1976), 「韓國行政機關 資料室運營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조 (1980), “정보분석센터의 組織과 運營”, 「情報管理 研究」, 13 권 5 호,
pp.125-132.
- 김종열 (1970), 「정보의 역할」, 서울: 조광出版社.
- 김해동 (1978), “전문직 教育機關으로서의 警察大學”, 「警察論學集」, (인천: 警
察大學), 제 2 호, p.22.
- 내무부 治安局 (1972), 「韓國警察史 I」,
(1973), 「韓國警察史 II」,
- 동아出版社 (1982),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4 권」, p.614.
- 머어도크, 존, W, (1970),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기능비교”, 「도협월보」, 제
11 권, 6 호, pp.12-13.
- 박정길 (1981), “정보관리의 重要성과 그 시스템 組織에 관한 研究”, 「부산산업
대학 논문집」, 제 2 권, 3 호, pp.227-233
- 백형조 (1984), 「警察組織 결정 과정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 법제처 (1986), 「大韓民國 現행법령집, 2 권, 14 권」.
- 사공철 (1956), “특수도서관의 자료정리문제”, 「도협월보」, 6 권, 4 호,
pp.23-36.